

葬事 등에 관한 法制 改善方案研究

A Study of Legal System on Funeral
Services etc.

연구자 : 이준우 (연구위원)

영문성명: Lee, Jun-Woo

국문 요약

최근 화장율의 급격한 증가와 장묘문화의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장묘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많지만,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과 시행에 있어서 규정의 불비, 다른 법령과의 모순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급변하는 장묘문화와 불일치하는 면도 없지 않다.

이 연구는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개정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합리적인 매장 및 묘지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 범위로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장묘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미처 정비되지 못하였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관련법령의 분석 및 개선 연구도 포함한다.

개정된 매장 및 묘지제도 등에 관하여 그 전체적인 행정 및 업무의 흐름에 따라 장사등에관한법령 및 관련법령의 관계규정을 먼저 정리하고, 각각의 개별적·단계별 필요한 법규사항과 운용상의 필요한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입법적 미비와 개선점, 법리적 문제점 등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연인의 사망에서부터 최종적인 분묘와 유골의 처리·소멸에 이르기까지 몇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관련법령상의 규정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사망자의 법적 인격에 관한 행정적 처리, ii)사망자의 시신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葬事유형과 행정적 취급, iii)묘지·분묘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와 변경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와 제한에 사항, iv)장사와 관련되는 각종 법률행위와 묘지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및 v)묘지와 분묘의 설치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분쟁의 해결에 관한 문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된다.

이를 위하여, 각종 통계의 활용, 문헌조사,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의 이용규정 및 관련 조례 분석,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최근 장례제도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의식과 관행의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새 법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토지의 효율적 공간이용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키워드: 매장, 묘지제도, 장묘제도, 분묘, 납골시설

abstract

With a sharp increase of cremation rates, a recent change in funeral culture has led to the alteration of the existing funeral system itself. Current laws governing funeral services, though appropriate in the basic directions, has the problems of the lack of detailed systematic devices, conflict with other laws, and inconsistency with actual funeral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reasonable burial and graveyard system in the light of the system and contents newly introduced in the current 'Funeral Services etc. Act'. Also, it contains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not in harmony with the new funeral system.

With respect to amended burial and graveyard system, this paper seeks to readjust the provisions of the Funeral Services etc. Act and other relevant laws in the light of their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to analyze their legislative incompleteness and problems and find their improvement.

In detail, this study contains the handling of administrative affairs on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deceased, the types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funeral services for the deceased,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nd restric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graveyards, tombs, and charnel facilities, legal issues on various legal acts concerning funeral services and on graveyards, etc.,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over the establishment, etc. of graveyards and tombs.

In the end, this paper presents legislative reform measures by utilizing various statistics, surveying documentary records, analyzing the provisions of laws and bylaws on the use of graveyards, crematories, and charnel facilities, and adopting the methods of comparative and legislative study.

This study is focused on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new legal system on the funeral services and the efficient use of land and serving for the prevention of possible disputes, by enhancing the practical effect of related systems in concert with recent change in customary practices and the way of thinking on funeral system.

※ Key Words: Burial, Graveyard System, Funeral System, Tombs, Charnel Facilities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I. 연구의 목적	11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 2 장 현황 및 문제점	15
I. 장사관련 현황	15
1. 화장의 증가 현황	15
2.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현황	17
3. 묘지 설치 현황	20
4. 장례식장 현황	22
II. 관련법령 현황	22
1. 개 관	22
2. 현행 장묘제도	30
3. 외국의 묘지제도	45
4. 현행 장묘제도의 문제점	49
제 3 장 법제 개선 방안	67
I. 설치기준·절차 등의 개선	67
1. 사설개인묘지 및 단체묘지의 설치 개선	67
II. 규정의 미비·흠결 및 충돌 개선	68
1. 용어의 재정리	68
2. 규정의 보완 및 불합리 제거	69

Ⅲ. 관련 법령의 정비	71
1. 구체적인 법규 제정	71
2. 종합장례서비스제 도입	72
3. 無緣墳墓의 정리	73
4. 국민의식의 변화 유도	74
Ⅳ.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수도법령·농지법령 및 국토·도시 계획법령간의 충돌·모순문제 개선방안	74
1. 지적법상의 지목변경과 묘지의 설치	74
2. 관련허가의 의제	75
Ⅴ. 묘지관련분쟁 방지	76
1. 묘지등의 매매와 설치 허가의 승계 문제	76
2. 분묘기지권과 기존분묘에 대한 적용배제	78
 부 록	
◎ 일본의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	79
 참고자료	
◎ 관련법령규정	121
 참고문헌	147

표 목 차

○ 화장율의 연대별 변화추이	16
○ 연도별 사망자수, 화장건수 및 화장율	16
○ 2001년도 시·도별 화장현황	16

○ 전국 화장장 설치 현황 및 실적	17
○ 전국 납골당 설치 현황 및 실적	19
○ 전국 공설묘지 설치 현황	20
○ 전국 사설법인묘지 설치 현황	21
○ 장례식장 현황	22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묘지면적을 확보하고 선진 장사문화 조기 정착 및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공동묘지, 무연고묘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¹⁾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동묘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의 화장율 급증과 묘지부족이란 사정과 함께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새롭게 법제적 정비가 이루어진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장묘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는 개인묘지에 의한 국토잠식과 경관훼손의 문제, 묘지공간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종래의 개인·가족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된 데에 있다. 여기에 지나치게 넓은 개인묘지면적이나 불법 무연분묘의 확산 등도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장묘제도는 한 사회의 문화적 관습으로서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공공에 의한 제도적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 및 환경파괴가 사회문제로 발전하면서 장묘 관습의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단순히 묘지문제 내지 장묘문화의 개선이란 관점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으로까지 질적 변화가 국가 정책에도 이루어졌고, 이를 반영하여 종전의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화장율의 급격한 증가와 장묘문화의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장묘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를 반영한 개정법률은

1) 충남 부여군은 2003. 9월부터 2004년 2월말까지 관내 67개 공동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일선 시·군지역에 산재한 9개소의 공동묘지를 재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광명시의 경우에는 공동묘지 전산화 및 공동묘지 재정비를 위한 일제조사를 2003년에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많지만,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과 시행에 있어서 규정의 불비, 다른 법령과의 모순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급변하는 장묘문화와 불일치하는 면도 없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100여개의 관련법령의 연계 내지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장례 및 묘지제도 등과 관련된 수도법령 및 농지법령, 도시계획법령간의 상충 등으로 인한 법률의 실효성 저해를 방지함은 물론, 동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규정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하여 바람직한 장묘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법제도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개정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합리적인 매장 및 묘지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 범위로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장묘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미처 정비되지 못하였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관련법령의 분석 및 개선 연구도 포함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하여 개정전의 법령과 현행 법령을 우선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입법 목적과 그에 따른 세부적 제도가 법현실과 관계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관련 묘지·납골시설·화장을 등의 현황, 장묘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의견이나 법제개선 의견 등도 살핀다.

개정된 매장 및 묘지제도 등에 관하여 그 전체적인 행정 및 업무의 흐름에 따라 장사등에관한법령 및 관련법령의 관계규정을 먼저 정리하고, 각각의 개별적·단계별 필요한 법규사항과 운용상의 필요한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입법적 미비와 개선점, 법리적 문제점 등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자연인의 사망에서부터 최종적인 분묘와 유골의 처리·소멸에 이르기까지 몇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관련법령상의 규정과 대안의 모색을 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i) 사망자의

법적 인격에 관한 행정적 처리, ii)사망자의 시신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장사유형과 행정적 취급, iii)묘지·분묘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와 변경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와 제한에 사항, iv)장사와 관련되는 각종 법률행위와 묘지등에 관한 법적 문제 및 v)묘지와 분묘의 설치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분쟁적 요소의 해결에 관한 문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된다.

이를 위하여, 각종 통계의 활용, 문헌조사,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의 이용규정 및 관련 조례 분석,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최근 장례제도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의식과 관행의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새 법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토지의 효율적 공간이용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제 2 장 현황 및 문제점

I. 장사관련 현황

묘지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의 변화, 묘지공간의 확보 곤란,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 등은 장례제도나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매장 중심의 장묘관습은 최근 화장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납골시설의 증가와 화장장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묘지공간의 부족현상이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고, 반면에 지방에는 여전히 무연분묘의 확산 내지 방치와 호화 개인묘지의 상존이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묘지의 현황 관리는 묘적부의 관리로 관련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는 사망신고, 매장신고, 화장신고 및 묘지 설치허가 및 신고 등을 통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확한 실태의 조사와 통계의 작성 및 관련 대장의 작성·유지가 상당히 미흡한 현실이다.

시도별 화장율, 납골시설, 공설·사설묘지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화장의 증가 현황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연도별 화장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2001년도에는 38.5%에 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화장율의 증가는 묘지공간의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반면에 화장장시설과 납골시설의 수요는 화장율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 사망자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에 화장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국 화장건수가 24만여명 사망에 9만여건으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제 2 장 현황 및 문제점

○ 화장율의 연대별 변화추이

(단위 : %)

연도별	'54	'70	'81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화장율	3.6	10.7	13.7	17.8	18.4	19.1	20.5	22.0	23.0	23.2	27.5	30.3	33.7	38.5

○ 연도별 사망자수, 화장건수 및 화장율

구 분	'97	'98	'99	'00	'01
사망자수	244,069	243,252	246,539	247,346	242,730
화장건수	56,635	66,797	74,664	83,233	93,493
화장율(%)	23.2	27.5	30.3	33.7	38.5

○ 2001년도 시·도별 화장현황

(2001. 12. 31기준, 단위: 명)

구 분	사망자수	화장건수	화장율(%)
총 계	242,730	93,493	38.5
서 울	37,979	20,350	53.6
부 산	18,283	11,376	62.2
대 구	11,315	4,250	37.6
인 천	10,516	5,271	50.1
광 주	5,701	1,359	23.8
대 전	5,704	2,031	35.6
울 산	3,898	2,523	64.7
경 기	38,863	17,844	45.9
강 원	10,719	3,434	32.0
충 북	10,674	2,141	22.1
충 남	14,157	3,008	21.1
전 북	13,788	2,872	20.8
전 남	17,758	2,658	15.0
경 북	21,099	5,797	27.5
경 남	19,245	7,519	39.1
제 주	2,822	455	16.1
기 타	1,209	605	50.0

※ 기타는 국외자, 신원확인 불명자 등의 경우임

시·도별 화장 현황에서는 특징적으로 광역시와 수도권의 경우에 화장율이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추론하건대 수도권등의 경우에는 묘지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묘지난이 심각한 것과 성묘등의 교통불편 및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의식변화가 강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는 향후 지방으로 확산될 여지가 보이며, 그러할 경우에는 기존의 장묘문화가 매장 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²⁾

2.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현황

2001년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화장장은 45개소로 화장로는 189개이다. 순수 화장건수는 93,493건으로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정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에는 화장장의 처리용량을 넘어 서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 전국 화장장 설치 현황 및 실적

(’01.12.31. 현재)

구 분	설 치 년 도	개소수	화장로수	화 장 건 수				화장로 1기당 1일 처리건수
				계	순수 화장	사산아	개장 유골	
대 구	66	1	9	8,130	5,437	1,035	1,658	2.47
인 천	77	1	8	11,502	6,723	1,300	3,479	3.94
광 주	00	1	5	3,923	2,212	50	1,661	2.15
대 전	76	1	5	7,891	3,512	2,693	1,686	4.32
울 산	73	1	4	3,530	2,924	353	253	2.42
대 전	76	1	5	7,891	3,512	2,693	1,686	4.32
울 산	73	1	4	3,530	2,924	353	253	2.42

2) 전국 차원에서의 묘지문제가 개인묘지에 의한 국토잠식과 경관훼손에 초점이 주어지는 반면, 대도시인 서울의 장묘문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된다. 서울은 대도시라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묘지공간의 절대적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경혜, “장묘의식의 변화와 서울시 화장 장려방안”, 『서울시정연구』(1998. 6), p.68.

제 2 장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설 치 년 도	개소수	화장로수	화 장 건 수				화장로 1기당 1일 처리건수
				계	순수 화장	사산아	개장 유골	
경 기	82/00	2	22	16,132	10,126	2,284	3,722	2.01
강 원	64/64/71/76/ 79/80	6	14	5,996	3,856	199	1,901	1.17
충 북	67/96	2	7	2,438	1,426	50	962	0.95
충 남	78	1	6	3,665	1,750	91	1,824	1.67
전 북	77/80/81/83	4	12	8,800	3,039	552	5,209	2.01
전 남	71/81/88/88/ 98	5	10	2,966	1,551	147	1,268	0.81
경 북	32/48/72/72/ 78/81/82/82/ 83/89	10	19	7,855	4,906	445	2,504	1.13
경 남	71/71/71/79/ 80/80/85	7	27	12,259	9,138	1,238	1,883	1.24
제 주	80	1	3	1,683	454	830	399	1.54
계	-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2.05

일본의 경우 화장로 1기당 평균화장건수의 적정치를 1.7~2.0으로 보고 있으나, 1년중 휴장일을 5일이상 두고 있으며, 화장장마다 예비 화장로를 두어 화장로의 과부하를 예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로 1기당 평균화장건수가 2.05건으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년중 휴장일이 없이 매일 가동되고 있으며, 예비화장로도 없어 화장로가 과부하 상태로 개보수 필요성이 빈번하게 요구되고, 시설의 내구연한이 짧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권과 대도시지역의 화장로 가동율은 기준치보다 높이나 시설확충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 80년대 이전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시설현대화가 긴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개장유골이나 사태의 처리비율이 34%로 화장로의 사용효율 및 경비절감 등을 위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화장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화장건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총 100개의 납골당에 84만여기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잔여 공간은 현재 55만여기가 있다. 2001년도의 납골건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8년치의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된다.³⁾

○ 전국 납골당 설치 현황 및 실적

(’01. 12. 31현재)

시·도	개소수			총봉안 능력 (A)	기봉안 실적 (B)	봉안가능 기수 (A-B)	'01년 봉안실적	비율(%) (B/A×100)
	계	공 설	사 설					
서울	5	5	-	92,377	83,991	8,386	17,790	90.92
부산	3	3	-	66,230	37,714	28,516	8,442	56.94
대구	2	1	1	11,780	5,572	6,518	1,170	47.30
인천	4	3	1	23,164	1,230	21,934	53	5.31
광주	1	1	-	21,842	8,065	13,777	801	36.92
대전	2	1	1	28,190	5,935	20,955	1,338	21.05
울산	-	-	-	-	-	-	-	-
경기	9	2	7	107,024	12,202	94,822	5,939	11.40
강원	7	7	-	26,400	3,478	23,005	901	13.17
충북	10	4	6	70,070	12,857	57,213	3,146	18.35
충남	17	15	2	133,757	58,682	75,075	19,835	43.87
전북	6	4	2	52,205	9,633	42,572	2,643	18.45
전남	8	5	3	36,504	3,853	32,651	830	10.56
경북	13	7	6	97,428	28,263	69,165	3,328	29.01
경남	11	6	5	67,486	16,110	53,058	4,359	23.87
제주	2	2	-	6,792	1,265	5,527	157	18.62
계	100	66	34	841,249	288,850	553,174	70,732	34.30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납골당은 제외

3) 서울시의 납골 시설 확보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2001년7월 서초구 원지동 일대 5만평을 추모공원 부지로 확보하고 그 해 12월 이 부지를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2004년까지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위를 건립해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주민을 등에 업은 서초구의 반발은 거셌다.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8월 시측이 주민들에게 내민 협상카드는 추모공원 대신 화장장과 병원(국립의료원)이 함께 들어서는 의료단지로 만들겠다는 것.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 을 풀어 병원과 납골 시설을 함께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이해 관계에 따라 격렬한 갈등이 빚어진다: 주간한국, 2003. 11.13자.

3. 묘지 설치 현황

○ 전국 공설묘지 설치 현황

('01. 12. 31현재)

시·도	개소수	허가면적	총매장 가능기수 (A)	기매장 기수 (B)	향후매장 가능기수 (A-B)	'01년 매장 건수	비율(%) (B/A×100)
서울	5	7,143,300	89,784	88,384	1,400	377	98.44
부산	1	743,219	29,021	26,772	2,249	74	92.25
대구	4	1,948,434	41,138	12,688	28,450	60	30.84
인천	118	3,372,665	146,508	111,858	34,650	1,441	76.35
광주	2	1,637,420	82,045	38,926	43,119	1,739	47.44
대전	1	499,440	14,400	10,345	4,055	53	71.84
울산	-	-	-	-	-	-	-
경기	57	2,012,868	55,182	45,988	9,194	2,190	83.34
강원	10	2,344,301	30,212	7,806	22,406	404	25.84
충북	6	1,027,376	31,078	15,884	15,194	691	51.11
충남	9	1,071,048	37,539	12,285	25,254	659	32.73
전북	10	530,769	36,671	23,814	12,857	1,379	64.94
전남	10	1,802,632	51,803	24,756	27,047	1,479	47.79
경북	8	358,181	10,614	8,143	2,471	52	76.72
경남	5	681,358	11,244	9,597	1,647	345	85.35
제주	22	1,762,537	75,265	29,531	45,734	546	39.24
계	268	26,935,548	742,504	466,777	275,727	11,489	62.87

○ 전국 사설법인묘지 설치 현황

('01. 12. 31현재)

시·도	개소수	허가면적	총매장 가능기수 (A)	기매장 기수 (B)	향후매장 가능기수 (A-B)	'01년 매장 건수	비율(%) (B/A×100)
서울	-	-	-	-	-	-	-
부산	5	838,750	51,250	33,772	17,478	754	65.90
대구	1	251,188	10,000	8,600	1,400	6	86.00
인천	3	148,896	14,700	14,558	142	77	99.03
광주	3	73,609	4,094	4,094	-	-	100.00
대전	1	690,744	4,951	4,153	798	78	83.88
울산	2	530,271	33,391	26,208	7,183	901	78.49
경기	42	12,838,621	315,387	210,645	104,742	6,009	66.79
강원	7	1,679,992	47,660	29,335	18,325	1,515	61.55
충북	6	2,022,550	73,063	36,828	36,235	1,572	50.41
충남	7	2,600,519	92,822	57,992	34,830	2,581	62.48
전북	5	795,139	41,324	10,760	30,564	371	26.04
전남	5	917,754	44,477	18,799	25,678	448	42.27
경북	23	6,822,565	287,584	105,205	182,379	3,984	36.58
경남	12	5,246,934	284,507	164,019	120,488	4,208	57.65
제주	3	16,783	1,151	535	616	16	46.48
계	125	35,474,315	1,306,361	725,503	580,858	22,520	55.54

4. 장례식장 현황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은 병원장례식장(영안실)과 전문장례식장으로 나눌 수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총 465개 장례식장 가운데 병원장례식장은 426개소이며 전문장례식장은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병원장례식장의 운영형태는 직영체제와 임대체제로 나뉘며, 직영체제는 병원이 직접관리 운영하는 형태로 안치실, 빈소는 물론 장례용품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체제는 병원내에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운영관리하는 형태로 일정부분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 장례식장 현황

(2000. 12. 31현재)

총 관			운영형태별		시 설 규 모		비 고
계	직영	임대	병원	전문	빈소수	안치능력	
465	223	242	426	39	2,165	3,382	

II. 관련법령 현황

1. 개 관

장묘제도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은 i)묘지 등의 설치 제한 관련법령, ii)장제방식 관련 법령, iii)사망자의 법적 처리 관련 법령, iv)시체·사체의 취급 관련 법령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각각 관련 법령 현황을 개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묘지등의 설치제한 관련(§15)

- 도시계획법(§32①4): 녹지지역
- 수도법(§5①):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8, §55): 문화재보호구역

- 각종 수계관리법률(§32):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4): 수변구역
- 도로법(§50)·고속국도법(§8): 접도구역
- 하천법(§8): 하천구역
- 농지법(§30): 농업진흥구역
- 산림법(§49·§61·71①1): 채종림, 보안림, 요존국유림
- 사망사업법(§4): 사망지
- 군사시설보호법(§4)·군사기밀보호법(§5):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건위생 위해우려 지역
-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

2) 사망자의 구분에 따른 장제방식 관련

-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반
- 국립묘지령: 유공자 기타
- 행형법, 군행형법: 수형 중 사망자
- 시체해부보존법: 무연고자 및 기증자
- 선원법시행규칙: 항해중 사망선원

3) 사망자의 법적처리기관 관련

- 호적사무 소관청: 호적법
- 특별한 사망 관련기관
 - 선원법시행규칙:
 - 의사상자보호법시행규칙
 - 시체해부보존법
 - 행형법, 군행형법
 - 군사법원법
 - 검찰사건사무규칙
 - 전염병예방법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 시체·사체의 취급 관련

- 시체의 이동·운반: 전염병예방법, 철도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분묘의 발굴: 형법
- 사체의 감정·검증처분: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시체해부보존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검찰사건사무규칙
- 사체의 해부: 군행형법, 시체해부보존법,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 사체의 영득: 형법
- 사망진단서: 의료법시행규칙
- 사체에 관한 보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이장·개장금지: 전염병예방법

※ 분묘·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화장장』 관련 법령(24개 법령 49개조)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一般赦免令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葬事등에관한法律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地方自治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學校保健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묘지』 관련 법령(총 47개 법령 152개조)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建築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립4·19묘지규정·시행규칙
국립5·18묘지규정·시행규칙
국립묘지령·시행규칙
國稅徵收法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都市公園法·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2 장 현황 및 문제점

不動産登記法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一般赦免令

葬事등에관한法律·시행령·시행규칙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시행령

地方稅法·시행령

地方自治法

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형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 『분묘』 관련 법령(총 37개 법령, 74개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高速鐵道建設促進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觀光振興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시행규칙

軍事法院法

군인연금법시행령

道路法

民法

별정우체국법시행령

不動産登記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 시행규칙

産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小河川整備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葬事등에 관한法律 · 시행령 · 시행규칙

接境地域支援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 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징발법시행령

草地法

河川法

學校施設事業促進法 · 시행령

韓國水資源公社法

刑法

刑事訴訟法

제 2 장 현황 및 문제점

○ 『납골시설』 관련 법령(총 14개 법령, 39개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葬事등에관한法律·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 『시체』 관련 법령(총 37개 법령, 108개조)

檢疫法
輕犯罪處罰法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국립묘지령·시행규칙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軍行刑法·시행령
병역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선원법시행규칙
수형자등호송규칙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遊船및渡船事業法

應急醫療에 관한法律

醫療技士등에 관한法律

醫療法 · 시행규칙

臟器등移植에 관한法律

葬事등에 관한法律 · 시행령 · 시행규칙

傳染病豫防法 · 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行刑法 · 시행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2. 현행 장묘제도

1)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현행 장묘제도는 2000. 1.12 종전의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로 법률 제명을 바꾸고 전문 개정하여 장묘문화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변화를 그대로 법령에 반영하였다. 이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종전 매장 중심의 장묘제도에서 화장중심의 장묘 제도로 전환하려는 측면, 둘째 묘지등의 관리 중심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 그리고 셋째 묘지공간의 확보 측면이다.

화장중심의 장묘제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i)납골시설의 범위 확대, ii)장례식장의 법제화, iii)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등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i)묘지의 설치 제한과 분묘 및 그 시설물의 크기와 종류 등을 제한, ii)분묘기지권 불인정, iii)불법 분묘 또는 묘지에 대한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의 도입, iv)무연고 분묘의 정리 등이다.

묘지공간의 확보와 관련되는 것으로, i)시한부 묘지제도의 도입, ii)묘지 및 분묘의 점유면적의 축소, iii)묘지의 일체조사와 묘지등의 수급 계획 수립 등이다.

그밖에 관련되는 제도로서 묘적부의 관리·정비, 화장·납골대장의 정비 등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묘지면적 제한	개인묘지: 24평 → 9평(30㎡) 집단묘지: 9평 → 3평(10㎡)
시한부 매장제	영구매장: 15년(최장 60년)제한 제한기간이후 화장 및 납골의무화
이행강제금 징수	불법묘지, 기준초과등 시정명령 후 → 이행강제금 징수(1년 2회씩 부과)
무연시체의 납골화	무연시체로 판명시 화장 후 일정기간 납골화 → 10년 후 집단매장
묘지등 수급계획 수립	사설 화장장, 납골당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지방자치단체는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이러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급격한 장묘제도의 전환과 전문개정에 따른 몇 가지 미흡한 사항과 불비된 사항이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된 사항을 비교하고,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개정의견의 반영 정도 등을 살핀 후, 현행 법령에서 추구하는 장묘의 원칙과 이념 등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법의 실효성 문제와 입법기술상의 문제로서 입법의 불비와 흠결 등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1) 주요 내용의 비교

개정사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분묘의 설치면적 축소	· 개인묘지: 30㎡(9평)이내 · 집단묘지: 80㎡(24평)이내	· 개인묘지: 30㎡(9평)이내 * 합장의 경우도 동일 · 집단묘지: 10㎡(3평)이내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	없음	· 기본설치기간: 15년(3회에 한하여 매회 15년씩 연장 가능(최장 60년. 조례에 의하여 연장기간 단축 가능)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 의무	
불법분묘 정비신설	없음	· 토지소유자(묘지)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사설납골시설 설치완화	· 도시사 허가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사항	
법의 실효성 확보 강화	행정제재 신설	없음	· 설치기준 위반의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폐쇄 또는 허가 취소, 업무정지 가능
	벌칙강화 · 이행강제금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구류 또는 과태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시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2) 개정내용의 특징

①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종전 법이 납골시설 중 ‘납골당’만을 법령상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던 점에 비하여 확대된 것이다.

납골시설에도 개정전 법률의 납골당 이외에 납골묘와 납골탑을 새로 추가하여 발전된 납골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입법 목적에 합리적인 묘지제도의 마련 이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중심적 이념가치로 추가하고 이를 위한 개별적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점에서 개정전의 법률이 선언적 규정에 그친 것과 차이가 있다.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

제 1 조(목적) 이 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6158호)

제 1 조(목적) 이 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의 정의(제2조)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장사의 대상을 시체 또는 유골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세분화한 점에서 개정전의 용어 정의를 크게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연고자』의 개념 및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매장: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개정전과 같음)
- ii) 화장: 대상에 시체외에 『유골』을 추가
- iii) 개장: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
 - *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收藏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매장한 시체를 화장함』(개정전)
- iv) 납골: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신설)
- v) 분묘: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개정전)
- vi) 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 *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개정전)
- vii) 화장장: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 * 『시체를 화장하기 위하여 화장장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
- viii) 납골시설: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
 - * 납골당: 『타인의 위탁을 받아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허가를 받은 시설』(개정전)
- ix) 연고자: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신설>

③ 묘지의 면적·시설 등의 제한

i) 면적

- 1973.3.13 개정법률 이전: 면적의 제한 없음
- 1973.3.13 개정법률 :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 합장은 25㎡이내(묘지면적: 개인묘지는 80㎡이내, 공동묘지내의 1기당면적은 30㎡이내)
- 2000.1.12 개정법률 : 분묘 1기 및 시설물의 설치구역면적은 10㎡(합장은 15㎡)이내, 개인묘지는 30㎡이내(법§16).

ii) 시설물의 제한

- 1981.3.16 개정법률 이전: 제한 없음
- 1981.3.16 개정법률 : 묘지의 면적,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제한(비석 1개, 상석 1개, 석물 1쌍(인물상 제외))
- 2000.1.12 개정법률 : 비석 1개(지면으로부터 2m이내, 표면적 3㎡이내), 상석 1개,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 지면으로부터 2m이내)

2) 묘지 등의 종류 및 법정기준

(1) 묘지의 종류

종전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묘지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관리주체	집단화여부	묘 지 유 형			비 고
공설묘지			공동묘지		공설묘지
"	집단	공원묘지	공설공원묘지		묘지공원
사설묘지	"	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	사설집단묘지	법인묘지
"	개별	사설묘지	단체묘지		-
"	"	"	개인묘지	사설개별묘지	개인묘지
"	"	"	가족묘지		가족묘지
"	"	"	종중묘지		종중묘지

(2) 묘지유형의 변천

共同墓地는 1912년에 제정된 관련법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이며, 일반묘지라고도 한다.

公設公園墓地는 1961년에 제정된 매장법(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묘지의 공원화를 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으로, 시·군·구·읍·면에서 관리하는 집단묘지와 1962년 이전에 조성된 공동묘지 중 공원화된 묘지를 말한다. 사설공원묘지는 관계법에 따라 재단법인에 의해 관리되는 사설집단묘지와 종교단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로서 그 규모가 10만㎡이상인 묘지를 말한다.

團體墓地란 군민회, 종교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10만㎡미만인 사설집단묘지를 말한다. 종중 또는 문중묘지는 종중이나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2천㎡이하인 묘지이다. 가족묘지는 매장법에 의거 허가를 얻은 5백㎡이하의 묘지를 말하며, 개인묘지는 1인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80㎡이하의 묘지를 말한다.

이상의 묘지 종류는 종전법률에 의한 것이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은 i)공설묘지, ii)사설묘지로 대별하고 있고, 다른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iii)국립묘지, iv)공원묘지 기타 v)특수묘지가 있다.

① 공설묘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묘지로, 종래의 공동묘지와 시립묘지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12조).

② 사설묘지

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묘지로서 다시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13조).

그밖에 종교단체, 군민회 등 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묘지도 이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에 직접적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인묘지

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그 면적이 10만㎡이상 해당하는 묘지를 의미하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 설치한 묘지나, 면적이 10만㎡미만이 묘지는 법인묘지로 볼 수가 없고, 이른바 『단체묘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 i) 개인묘지: 개인 1인 또는 부부의 분묘를 설치하는 묘지로 묘지면적에 관한 규정 없고, 분묘 및 시설물의 설치면적 제한(30㎡이하)이 있을 뿐이다.
- ii) 가족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로, 가족당 1개소에 묘지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iii) 종중·문중묘지: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묘지로,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허가면적 내에 재실·사당 등을 설치할 수가 있다.
- iv) 법인묘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만㎡이상이어야 한다.

③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는 국립묘지령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묘지도 이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④ 특수묘지

그밖에 국가 등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묘지로서는, 행형법·군행형법 등에 의한 사망한 수형자의 시체 중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 가매장 및 집단매장하는 묘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장하는 묘지 등이 있다.

(3) 납골시설

납골시설에는 종전 법률은 납골당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장사 등에관한법률은 납골묘, 납골탑 및 납골당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설치 장소는 사원, 묘지, 화장장 기타 조례가 정하는 장소이다. 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에는 산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납골묘

- i)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1개소에 한하며, 그 납골묘지의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이하, 가족납골묘의 경우에는 30㎡이하이다.
- ii) 종중 또는 문중 납골묘: 1개소에 한하며, 그 납골묘지의 면적은 100㎡이하이다. 납골묘지의 면적 범위 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 iii) 종교단체 납골묘: 1개소에 한하며, 납골묘지의 면적은 500㎡이하이다.
- iv) 법인 납골묘: 개수 및 면적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의미하고 있다(법 제14조제2항)

② 납골탑

납골묘의 경우와 동일하다(시행령 별표 3 나.)

③ 납골당

- i)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연면적 100㎡이하로 제한됨
- ii) 종교단체 납골당: 면적 제한 규정 없음
- iii) 법인 납골당: 면적 제한 규정은 없으나, 유골 3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3) 현행법상 장사 유형 및 절차

현행법(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시체의 장사 및 최종 처리는 시체 및 분묘의 연고자의 유무에 따라 장사방법과 분묘등의 설치기간 및 최종 처리방법이 다르게 된다.

(1) 무연고 시체의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시체에 대하여 10년 동안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위의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하면,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도록 하고 있고,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다시 화장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인 집단매장의 장소나 집단매장의 방법, 집단매장기간, 집단매장 이후의 처리등에 관하여 법령에서는 따로 규정하는 바는 없다.

(2) 연고 시체의 경우

사망자에게 유족 등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화장, 납골 등의 방법으로 장사하면 된다. 이는 다시 장사 후의 유형에 따라 i)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와 ii)납골시설에 안치(납골)하는 경우, 및 iii)완전소각 내지 화장골분을 산골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다시 그 분묘의 연고자 유무 및 관리유무에 따라 i)有緣墳墓, ii)無緣墳墓 및 iii)準無緣墳墓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준무연분묘는 분묘설치기간이 만료한 후 연고자가 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묘 및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로서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얻어 개장하는 분묘를 편의상 분류한 것이다.

① 유연분묘

보존분묘를 제외하고는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분묘는 시한부매장제도에 놓인다. 따라서 최초 15년의 기간과 최장 3회 각 15년씩의 연장기간 동안 매장할 수 있다. 물론 조례에 의하여 각 연장기간을 5년에서 15년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으므로 총 매장가능기간은 최소 30년에서 최대 60년으로 한정된다.

매장기간(분묘설치기간)이 종료하면, 연고자는 1년이내에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 무연분묘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있으나, 불법으로 설치한 분묘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분묘가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토지나 묘지에 토지 소유

자나 묘지 설치자·연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가 불법분묘에 해당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3조). 다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존속하려면 계속 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및 권원이 있는 분묘에 해당되어 제외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고가 없는 분묘가 좁은 의미의 無緣墳墓에 해당한다(법 제24조제1항). 이들 분묘는 모두 개장의 대상이 된다. 개장을 할 경우에는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하게 된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분묘의 경우는 개장의 방식이 이장(매장) 또는 화장·납골 등으로 처리되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는 화장·납골 형태의 개장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전자는 개장허가가 필요하나, 후자는 행정집행이므로 별도의 개정허가절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두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규칙 9조제2항 4호 및 5호).

개정전 법률에서는 개장한 무연유골은 공·사설납골당에 집단안치하도록 하고 그 기간 및 이후 처리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구법 제15조의2제2항) 현행법에서는 ‘일정기간 납골한다’는 규정 외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③ 준무연분묘

이는 매장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연고자가 종료 후 1년내에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후 일정기간 납골하게 되는 분묘이다. 개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만 하면 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 일정기간 납골 후의 처리에 관하여도 현행법령은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납골시설

연고자가 있는 시체로서 화장하여 납골하는 경우에는 공설납골시설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공설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15년(연장 가능), 부산시의 경우에는 15년 내지 영구, 대구시의 경우에는 영구, 광주시의 경우에는 10년단위 또는 영구분양이 가능하다고 시설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설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계약사항으로 영구분양을 일반적인 이용방식으로 하고 있다.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기간제 이용이든 영구분양이든 유골함 등의 관리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바, 관리비 납부의무 내지 납부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적 처리에 관하여 현행법령은 묘지 내지 분묘와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개장의 개념 범위 안에는 납골된 유골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오직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대상으로 하는 이장 또는 화장을 의미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따라서 납골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동법시행규칙 별지3호의 『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보면, ‘묘지 또는 납골된 장소’와 ‘개장장소’ 및 ‘개장방법(화장 또는 매장여부)’를 두고 있으므로 개장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에서 상위법률의 규정(제2조제3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3) 시체의 형태별 장사절차

한편, 시체의 형태를 기준으로 각 장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대 상	장사 유형	신 고	장 소	종료행위
시체 (시신)	매장	사망신고(안 날로 1월이내)(호적법 §87①)	묘지	분묘설치
		매장신고(매장후 30일이내)		
		묘지설치신고		
	화장	화장신고: 사전신고(신고필증)	화장장	납골시설에 안치(納骨)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매장	
	· 읍·면·동장 확인서		散骨	

대 상	장사 유형	신 고	장 소	종료행위
· 매장 시체	개장 (移葬, 火葬)	개장신고(사전신고)	· 신 묘지 · 납골시설	새 분묘설치 · 납골시설에 안치(기타 산골)
사태	화장	화장신고(사전신고)	화장장	매장 · 납골
<유골> · 개장 유골	개장 (화장)	개장(화장)신고(사전신고)	· 신 묘지 · 납골시설	납골시설에 안치 · 산골 * 매장 가능
· 일반 유골	매장	매장의 절차에 의함	묘지	분묘설치
	화장	화장의 절차에 의함	화장장	매장 · 납골 * 산골
· 화장 유골	개장 (이장)	매장 · 납골절차에 의함	· 화장장 · 묘지 · 납골시설	· 화장유골매장 (분묘설치) · 납골 * 산골

위에서 보듯이, 시체는 i)사망 당시의 시체(시신)와 ii)묘지에 매장된 시체(매장시체)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매장, 화장의 대상이 되나, 후자의 매장시체는 개장의 대상이다.

유골은 i)사망후 발견 당시의 유골(탈육된 일반유골), ii)매장된 후 탈육된 유골(개장유골) 및 iii)시체 또는 일반유골 및 개장유골을 화장한 후에 생긴 유골(화장유골)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유골과 화장골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상적으로 화장한 후에는 유골이 분쇄 처리되어 유골함(상자)에 담아 유족에게 전달되므로 골분의 형태로 되어 있다.⁴⁾ 일반유골은 시체와 마찬가지로 장사되므로 매장 또는 화장의 대상이다. 개장유골은 개장의 대상이므로 개장절차에 따라 이장, 화장후 납골 또는 산골처리 된다. 화장유골은 대부분 납골 또는 산골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골함에 담아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

4) 일본의 화장관행은, 상당히 정밀한 화장방법을 사용하여 3종의 유골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유골함으로 담은 유골형태는 i)큰 뼈의 형태를 유지한 것, ii)목뼈·척추뼈와 같이 형태를 유지한 뼈유골이고, 이들은 전자는 가족납골묘에 안치하고, 후자는 가정 등에 안치 내지 보관한다. iii)기타 작은 뼈 및 뼈가루는 화장장의 산골장소에서 산골한다.

이러한 구분은 각종 장사절차상의 신고에 차이가 있다.

i) 시신: 사망신고, 매장·화장신고

ii) 매장시체: 개장신고(*사망신고 불필요)

iii) 유골:

- 일반유골: 시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망신고, 매장·화장신고
- 개장유골: 매장된 유골로서 개장의 대상인 유골. 개장절차에 따라 화장, 매장 또는 납골처리. 개장신고
- 화장유골: 사망후 또는 매장후 화장처리한 유골. 사망신고 및 화장신고

4) 기존 분묘·묘지의 처리

개정법인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기존 분묘에 관하여 다음 표에서 보듯이 종전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분묘로서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시장·군수 등이 개장하여 화장한 후 일정기간 납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고자”의 개념 범위가 문제로 될 여지가 없지 않다.

개정 장사법은 연고자에 해당하는 者로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者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者』(§2조 9호 사目)을 규정하고 있다.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분묘를 관리하는 자』 또는 『당해 분묘가 있는 묘지를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종중·문중묘지, 단체묘지, 법인묘지의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가 설치 당시 또는 설치 이후에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묘지의 관리자를 ‘연고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들 분묘는 토지소유자 내지 묘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분묘에 해당하는 바, 친족관계에 있는 연고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 그 분묘를 토지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등이 개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묘지·분묘로서 개정법률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적법한 묘지·분묘로 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에 의한 묘지나 분묘의 설치제한 및 점유면적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시한부묘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분묘의 점유면적 제한에 관한 개정법률의 규정은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법률에 의하여 변경된 분묘의 점유면적 및 시설물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묘지 이전·개수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자의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묘지 및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와 묘적부등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지역적·개별적 법적용상의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한부묘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의 최초 설치 분묘부터 적용한다는 규정과 모순되는 면이 없지 않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묘지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다. 또한 묘지이전·개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고, 묘지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 이후에 새로이 설치하는 분묘로 되어 개정법의 시한부묘지제도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적법여부	연고여부	개정법 적용등	종전법	처 리
적법분묘	연고분묘	부칙§3 적용		적법 분묘, 시한부묘지제도의 적용 제외
	무연분묘	(§24조 적용)		시장·군수등이 개장(화장)후 일정기간 납골조치
불법분묘	연고분묘	분묘기지권 있는 분묘	* 관련 규정 없음	방치(분묘기지권 계속 유효: 부칙 §3)
		분묘기지권 없는 분묘	공고후 개장명령 (§16①)	현행법 적용(§23①) 토지소유자가 개장후 납골
	무연분묘	(§23조 및 24조 적용) (분묘기지권 상실)	토지소유자·관리인이 개장(허가)후 납골 (§16②)	토지소유자 (§23)· 시장·군수등 (§24)이 개장후 납골

5) 묘지의 설치제한

개정전의 법률(제8조의2)에서는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금지(공설의 경우) 및 설치허가(사설의 경우) 금지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 i) 국민보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지역
- ii)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 iii)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

현행법은 설치제한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집행의 명확성을 꾀하고 있다.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이 법 제15조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i) 녹지지역(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영 제14조제1항)
- ii) 상수도보호구역(수도법 제5조제1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 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 iii)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
- iv)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1.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도시계획법 제32조).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
2. 수변구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함) 중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5조제1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 법인묘지와 법 제1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3. 접도구역(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
4. 하천구역(하천법 제8조)
5.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제30조)
6. 채종림(산림법 제49조), 보안림(동법 제61조) 및 요존국유림(동법 제71조제1항제1호)
7. 사방지(사방사업법 제4조)
8.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군사보호구역(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한편,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의 성격

-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 기반시설 중 공공용시설(동법률시행령 제4조제2호):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 이들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28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

3. 외국의 묘지제도

1) 프랑스

현행 지방자치단체법전(Code des Communes)는 L.제361-1조 이하에서 묘지와 매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세이후 종교적 영향으로 도시근교의 수도원과 교회 등에 묘지가 집단적으로 형성되면서 성역화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후 도시화에 따라 도심에 자리잡게 된 묘지의 위생문제 등이 제기되어 결국 개장사업이 벌어졌다.

제 2 장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별로 설립·보존중인 공동묘지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공동묘지 내에 유명인사의 묘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주교의 장례관행 변화 등에 힘입어 화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골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파리의 경우에는 20개의 공동묘지에 67만 5천여기의 분묘가 있으나, 1기당 면적은 2~4㎡fh 전체 수도권 지역의 묘지점유면적은 0.2%에 불과하다.⁵⁾

① 묘지의 설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를 원칙적인 묘지의 형태로 하고 있고(L.제361-1조 참조), 개인도 시가지로부터 일정한 거리 바깥이면 사유지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L.제361-8조).

② 묘지의 사용기간

묘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시한부묘지제도를 두고 있다. 즉, 묘지는 15년, 30년, 50년 및 영구묘지로 구분하고 있으며(L.제361-13조), 장기간의 묘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L.제361-16조). 개장은 5년 단위로 새로운 묘지에서 할 수 있다(R.제361-8조 참조).

③ 분묘의 설치기준

공설묘지의 경우 3m마다 쇠말뚝이나 시멘트구조물로 구획을 하고, 1.5m 높이로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R.제361-4조). 묘혈은 80cm 폭에 1.5~2m 길이로 하며, 각각의 분묘는 횡으로 30~40cm, 종으로 30~50cm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R.제361-35조).

④ 장례식장 기타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제361-35조).

5) 장 로베르 피트, 『도시와 토지』, 한국토지행정학회 국제심포지엄 자료.

2) 일 본

1948년에 제정된 『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에 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종전의 한국 묘지제도등과 거의 동일하다.⁶⁾

묘지설치의 허가제(동법률 제2조), 묘지외의 장소에 매장 또는 화장장외의 장소에서의 화장 금지(동법률 제4조), 묘지・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운영 등의 허가제(동법률 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묘지나 분묘의 설치기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시한부묘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분묘는 우리와는 다르게 화장유골을 매장하는 방식이며, 현행 개인 납골묘의 유형에 가깝다. 또한 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사원 내지 납골당에 안치 내지 매장하는 예가 많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묘지만이 심각한 일본은 『전국 우량석재점모임』에서 최초로 관동지방 270개 구역의 묘지에 대한 전화정보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관련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묘지의 형태로 다양화되어 공영묘지, 사원묘지, 라커식묘지, 전천후형 실내묘지, 영구공양묘지⁷⁾ 등으로 계속 현대화되고 있다.

3) 중 국

중국의 경우에는 옛부터 농경지 등에 묘지가 산재하여 있어 국노이용을 가로막아 왔기 때문에 1990년부터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공동묘지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땅속 깊이 매장하기 등 국가 차원에서 토지남용을 규제하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화장으로 장례하는 경우에는 장례의 모든 절차상의 경비와 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되, 매장의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⁸⁾

6) 연원적으로는 우리의 묘지및매장등에관한법률이 일본의 동법률을 계수 내지 모방한 데에서 기인한다.
 7) 이는 미혼여성이나 후계가 없는 사람을 위한 위탁관리묘지이다. 사찰 등에서 관리하고 공양한다.
 8) 오전균, 『도시와 묘지』, 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 국제심포지엄(1992. 9) 참조.

4) 싱가포르

① 시한부매장제도의 도입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 1일부터 환경공중보건법(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에 의하여 모든 묘지의 매장 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는 시한부매장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1998년 11월 1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15년이 지나면 그 분묘를 폐쇄하고 그 묘지 구역을 3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새로운 묘지로 이용하며, 15년 이상된 기존의 묘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향후 4년 내지 5년 사이에 폐쇄된다.

싱가포르가 이러한 시한부매장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좁은 국토로 인한 토지 부족 때문에, 더 이상 토지를 묘지로 허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초아추캉 공동묘지가 현재 매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묘지이나 현재의 매장 추세가 계속된다면, 약 10년뒤인 2010년경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되어 묘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매장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기존 묘지를 없애고 새로 매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② 시한부매장제도의 운영방법

(가) 폐쇄 통지

매장 기간 만료 6개월 내지 9개월 전에, 당국은 묘지의 폐쇄 일시와 절차를 해당 가족에게 통지한다. 폐쇄 통지는 주요 일간지와 관보에 공고하는데 대상 분묘에 대하여 연고권자인 가족들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폐쇄 절차

최고의 경의와 위엄을 갖추어 철저한 감독 하에, 각 묘지별로 파낸다.

- i) 종교적으로 화장이 가능한 사람의 경우: 묘지에서 파낸 유골을 화장하고, 그 유골을 정부 소유 납골당에 안치한다.

- ii) 종교적으로 화장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 회교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묘지에서 파낸 유골에 대해 가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매장지의 1/8 크기에 해당되는 곳에 다시 매장한다. 가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재매장지의 크기는 일반 매장지의 1/16로 한다.

(다) 발굴, 화장, 재매장, 안치 비용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장관련 계약업체가 실시하는 모든 발굴, 화장, 재매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료이며, 가족들은 정부 소유 납골당에 안치되는 비용이나 재매장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라) 개인적 묘지정리

묘지를 자체적으로 폐쇄하고자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족들은 당국에 묘지 폐쇄 허가를 신청하고 자체 비용으로 자체 계약업체를 통해 정해진 시간 내에 무덤 폐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은 자체 비용으로 개인 납골당에 화장한 유해를 보관할 수 있다.

4. 현행 장묘제도의 문제점

1) 시한부묘지제도

개정법은 분묘의 설치기간과 시한부묘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시행일인 2001. 1.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당초 법률의 개정 목적 중의 하나가 묘지공간의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시한부묘지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 개정 당시 이미 사실상 수도권 일대에는 묘지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었다는 사정을 도외시한 점에서 그 정책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지가 의문스럽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는 신규 조성되는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 기존 공동묘지 등의 재개발에 따른 이장분묘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기존의 모든 유연분묘는 설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장묘문화의 정착이나 개정 장묘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큰 허

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분묘에 대하여 분묘설치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당사자의 장묘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분묘와 신규 설치 분묘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분묘도 그 설치기간의 기산점을 개정법 시행일부더로 하여 개정법상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도록 하면 부족한 묘지 공간의 확보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분묘 설치자에 대한 설득력 내지 준수의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시한부묘지제도의 확대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묘지·분묘의 설치허가·신고제 관련

이는 금지구역 이외의 토지에 대한 개인묘지설치 허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정법에서는 개인묘지 설치는 설치자가 묘지 설치후 30일 이내에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법 제13조제2항). 그리고 매장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뿐이다(법 제37조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개인묘지는 설치가 간편하고 설사 위반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묘지설치 금지지역(법 제15조, 영 제14조, 제11조)이 아닌 한 어느 곳이나 개인 묘지 설치형식으로 묘지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직도 풍수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로서는 이 개정법이 실시된 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산발적인 분묘설치가 여전히 성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정법은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장사문화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⁹⁾

3) 기존 불법분묘·기준위반분묘의 처리 문제

개정 장사등에관한법률은 기존의 설치기준 위반 분묘·묘지의 합법화 내지 방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9) 고창현, “葬事文化의 沮害要因과 葬事法의 改善方案”,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02.12, p.195.

개정법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내용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록 엄격하게 해석하면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우만을 개정법에 의하여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관행 등을 볼 때 적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존의 묘지·분묘·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와 동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개정법에 의하여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사람들의 묘지나 분묘설치는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매장법과는 관계없이 어디에나 분묘 또는 묘지를 설치한 경우가 관행이 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종전에 설치된 모든 묘지나 분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쉽다.

또 법 제24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연고분묘에 대해서는 처리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설사 시설기준 등이 이 개정법에 위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연고자가 있는 종전의 분묘에 대해서는 모두 있는 그대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사람들의 분묘 및 묘지설치의 관행 때문에 어디에나 분묘를 설치하여 국토의 훼손이 심각한 이 때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현재의 묘지나 분묘실태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데에 이번 개정법의 한계 내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4) 용어의 정의 및 사용례상 문제점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은 개정전의 법률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용어의 정의와 묘지등의 관련시설 확대 등에 따라 새로운 용어의 사용 및 개

념의 재정리를 피하였다. 그 결과 종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사항 및 관련 법령상의 규정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

② 개념정의상 문제점

i) 매장시설: 분묘(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 즉, 매장하는 시설) 이와 관련하여 분묘의 개념 및 기준에 있어서 平葬의 경우에는 묘지와 분묘의 구분 기준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묘지와 묘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는 묘지의 설치면적 및 분묘의 점유면적 제한과 직접 관계된다.

ii) 납골시설: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의 안치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산골시설(장소)은 현행법은 해석상 화장시설의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장 사

현행법은 장사의 방법으로 매장, 납골, 화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과 방법에 있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즉, 유골의 경우에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으나, 매장이나 화장의 대상인 유골을 특정하지 않고 ‘유골’로만 표현하고 있다.

- a) 매장: 시체·유골을 분묘에 장사
- b) 안치: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
- c) 화장: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
- d) 화장한 후의 잔존 유골의 처리: 매장, 납골, 산골

③ 납골묘와 분묘의 구분, 설치절차 등

납골묘는 납골시설로서 유골의 안치시설이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이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 즉, 매장하는 시설로서 ‘매장’의 개념에 ‘분묘의 설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분묘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매장의 방법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규정에 있을 뿐이다.

한편, 묘지의 설치 기준(영 제11조 별표2)에 분묘의 형태, 봉분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분묘의 시설물은 상석, 비석, 인입도로의 계단, 석축 등(§16) 묘지 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분묘와는 별개의 개념에 해당한다.

2) 규정의 불명확

(1) 묘지와 분묘등의 구역

현행법은 분묘 및 시설물은 묘지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묘지와 묘역(분묘와 시설물의 설치구역)이 동일한 것인지, 1기의 분묘등이 차지하는 면적으로서 묘역은 어떻게 묘지와 구분할 것인지가 애매하다.

묘역은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i) 莎城이 있는 경우에는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불가결한 사성 내의 지역
- ii) 莎城이 없는 경우에는 사성에 준하는 지역을 포함
- iii)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에는 모든 분묘를 보존하며 묘 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한다.¹⁰⁾

(2) 묘지면적과 분묘등의 점유면적

현행법은 “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법§16①)과 묘지(분묘를 설치하는 구역)(법§2조 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영 §15③)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묘지면적과 분묘 등의 점유면적에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전의 법률은 묘지를 먼저 설치허가에 의하여 조성하고, 그 이후에 분묘를 설치하는 방식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분묘면적과 묘지면적과의 상관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묘지면적이 주된 사항으로 되었다. 분묘의 시설물의 종류와 수 및 봉분의 크기가 호화분묘의 문제도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묘지면적과 분묘의 점유면적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이영준, 물권법, p.596: 대판(1959.10.8, 4292 민상 78), 대판 1988.2.23, 86 다카 2919; 대판 1960.6.30, 4292 민상 840.

(3) 가족묘지의 가족 및 친족의 범위

가족묘지의 경우,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묘지 설치자」인지, 「묘지에 최초로 매장되는 자」인지 불분명하다. 동법시행규칙은 묘지설치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 「호적등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호적등본은 실무상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모두가 필요하므로 현행 민법 및 호적법상의 가족 개념과는 다르게 된다.

또한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좁은 의미의 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관습상의 가족묘지 매장 대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가족묘지는 1개소에 한하므로 친족 중 다른 자는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즉, 가족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모두 당해 묘지에 분묘를 설치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실제 의도와는 달리 8촌이내의 친족까지 모두 신청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가족묘지에 매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령은 가족묘지의 설치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비용부담이나 권리·의무 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가족묘지가 조성된 경우에 당해 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설 또는 사설묘지에 매장하거나 납골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묘지가 설치허가면적과 실제 분묘설치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호화분묘 내지 과다점유면적 분묘로 연계될 폐단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당해 가족묘지에 매장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지나친 규제에 해당된다. 대안으로는 가족묘지 설치허가시 매장대상자 명단(및 해당자의 동의서)을 제출하게 하고, 이후에 대상자가 다른 묘지에 매장하거나 납골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게 하고, 그 면적만큼은 묘지를 축소하여 산림녹지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3) 규정 미비

(1) 납골의 방법, 절차 등

현행 법령은 납골의 정의를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골의 경우 그 유골의 소각정도 및 유골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유골』은 기술한 바와 같이 구분하면 3種으로 나뉜다.

일반유골로서 탈골 내지 탈육된 장사되지 아니한 유골, 매장되어 분묘에서 탈육되고 개장의 경우에 발굴되는 개장유골, 그리고 화장된 유골이다.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이 중에서 화장된 유골 즉 유골분으로서 화장유골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관습에 맞다. 그러나 현행 장사등에 관한법률은 이러한 구분이 없이 모두 ‘유골’로 규정하고 있다.

화장유골의 경우에는 그 운반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나, 일반 유골이나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처리하고 入棺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시체·유골의 운반 등

운반차량 등에 대하여는 장례용차량(영구차)을 제외한 일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시체나 유골의 이동시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필증을 지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매장신고는 사후신고이므로 신고필증의 지참이 곤란하고, 개장·화장신고는 사전신고이므로 신고필증의 지참이 가능하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신고접수증 내지 호적등본의 지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매장신고는 사전신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령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통상 3일장을 치르는 관습상 시간적 제약 때문에 사실상 매장신고의 이행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실이다.¹¹⁾

한편, 사전신고가 필요한 화장의 경우에, 사망신고의 신고기간과 화장신고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화장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화장신고의 부분

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은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 또는 개장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전신고제를 채택하였다.

으로서 사망신고에 갈음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호적 관할청에 촉탁 송부하여 호적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매장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사망신고의 미이행이나 지연으로 인한 각종 행정통계나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감소할 것으로 본다.

(3) 散骨葬 및 散骨 기준 및 절차 등

현재 공동산골장소를 두고 있는 화장장은 서울, 인천시 외에 없다. 또한 散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시행령에는 법인의 납골당 설치기준 중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 사설화장장등에는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란 일반적으로 화장장이나 납골당에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된 시설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참고로 散骨을 금지하는 관련규정으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다.

○ 산골의 금지 관련 법령

< 公有水面管理法 >

第15條(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公有水面에 廢棄物·廢油·廢水·汚水·糞尿·畜産廢水·有毒物 또는 動物의 死體類 기타 汚染物質을 버리거나 흘려가게 하는 행위
2. ~ 3. (생략)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화장했을 경우 화장인구의 60% 정도는 바다나 강에 화장재를 산골한다. 또 30%는 공동묘지 내에 있는 ‘추억의 정원’에 뿌리고 나머지는 납골당에 안치한다. ‘추억의 정원’

은 단순히 재를 버리는 곳이 아니다. 유족들은 미루나무 숲의 한곳에 골분을 뿌리고 고인을 자주 찾아 추모한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간. 프랑스인들의 실용주의 정신은 차후 우리가 가꿔나가야 할 화장문화의 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화장률 100%를 자랑한다. 이들은 납골당도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다며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 실천하고 있다. 화장한 골분¹²⁾을 땅에 묻고, 그곳에 나무를 심는 장례가 늘어나고 있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묘지의 법적 성격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묘지는 토지의 다양한 지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 지적법상으로 보면, 1필지의 주된 용도가 묘지인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 지적법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를 묘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27호).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塚”로 하고 있다.

한편,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지적법상의 묘지와는 다른 개념 아래 놓여 있다. 즉, 주된 용도에 따라 1필지로 분리·구획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납골시설은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별표3)고 규정하고

12) 골분: 동물의 뼈를 분쇄한 가루. 비료 또는 사료로 이용된다. 제법에 따라 조골분(粗骨粉)·증제골분(蒸製骨粉)·탈교골분(脫膠骨粉)·침출골분(浸出骨粉) 등으로 구분된다. 조골분은 보통 기압에서, 증제골분은 약 2기압, 탈교골분은 4기압에서 생골을 증열(蒸熱)하여 지방과 단백질의 일부를 제거, 건조·분쇄하고, 침출골분은 용제로 처리한 후 가열·건조·분쇄하여 제조한다. 조골분 및 증제골분은 질소 2.0~5.5%, 인산석회 45~55%, 단백질 18~25%이고, 탈교골분은 질소 0.1~2.0%, 인산석회 55~65%, 단백질 5~10%이다. 또한 침출골분은 질소 4.8~5.3%, 단백질 3.0~3.5%를 함유한다. 골분은 지효성(遲效性) 비료이고, 인산이 주성분이므로 질소 및 칼륨의 병용이 요망된다.

있는 바, 이는 지적법상의 지목 설정원칙과 배치된다. 묘지를 지적공부에 표시할 방법 및 근거가 없게 되고, 지적공부가 아닌 약도나 위치도를 정확한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없이 표시하는 형태로 되어 묘지의 설치면적이 나 분묘등의 점유면적 등을 공부상으로 표시하게 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다. 현지 확인의 경우에도 설치허가나 신고사항과 어떻게 불일치하는지 조사할 명확한 기준의 설정도 어렵게 된다는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이러한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의 묘지 개념은 묘적부와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가져 올 수밖에 없고, ‘민법상 물건으로서 토지에 해당하는 묘지’와 ‘1필지 토지의 일부분으로서의 묘지’를 구분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는 다음의 묘지등의 사용관계의 법적 성격 규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2) 묘지등의 사용관계 법적 성격

① 묘지 등의 설치 신고·허가와 묘지·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 i) 개인묘지 설치신고(규칙§5①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함
- ii)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개인묘지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 iii) 납골당·납골묘(납골탑 포함)의 설치 신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위의 경우 묘지·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어떠한 법률관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 즉, 타인의 토지 이용 법률관계는 i)지상권 설정, ii) 전세권 설정, iii)임대차 및 iv)사용대차가 있다. 이 중에 전 2자는 물권으로서 등기가 성립요건이며, 후자는 채권관계로서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기간의 문제도 각각 다른 바, 각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묘지 및 납골시설의 장기간 보유·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된다.

한편, 묘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용승낙서 중에 “묘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묘지의 소유자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지적법상 독립된 필지로서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토지'와 '묘지'가 별개의 물건(토지)이 아닌 동일한 물건으로서 토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도 동일인일 수밖에 없고, '장사등에관한법률상의 묘지' 개념에 따라 독립된 물건으로서 별도의 필지로 구분되어 등기된 토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구역』으로서 현실 경계에 의한 구획된 토지의 일부분으로 본다면, 소유자는 묘지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만 있을 수가 있고, '묘지의 소유자'는 엄격하게 법적으로는 '묘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한다. 즉,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용익물권자(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이거나 임차인 또는 사용차주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묘지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란 규정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② 묘지의 매매·양도

이와 관련되는 규정으로는 법 제19조의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인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매매나 양도는 독립된 물건이 대상이며, 부동산의 경우에 그 일부분을 매매·양도할 수는 없고 용익물권이나 사용계약(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가 있을 뿐이다.

매매나 양도는 부동산의 경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등기를 요하므로 분필하지 아니하고는 소유권의 변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持分權의 양도에 따라 共有의 등기를 하면 공동소유로 되어 그 지분을 소유하게 되지만, 지분의 특정을 위해서는 공유지분의 등기와 함께 지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만 독립적 사용이 가능하다.¹³⁾ 또한 시한부매장제도의 도입 및 이에 따라 매장기간종료후의 강제 개장규정에 따라 사용권이 종료하고, 묘지의 설치·관리자가 강제로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현행법령상의 규정으로 '매매' 또는 '양도'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더구나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임대·사용계약의 해제』만이 가

13) 이영준, 물권법, p.510.

능하고, 묘지를 이용할 계약당사자(사망자의 연고자)는 묘지의 설치·관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묘지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轉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¹⁴⁾

③ 기존 묘지 위의 새 묘지 설치문제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설치된 묘지 위에 다시 새로운 다른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1필지로서 묘지가 아닌 구획으로서 묘지이므로 새로운 묘지구획의 설정은 새로운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에는 가족, 문중·종중묘지는 각 1개소밖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다만, 허가의 변경으로 묘지설치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동법시행규칙에서 허가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별지서식 제5호에 설치변경사유로서 『면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도 동일허가신청인을 요하므로 타인인 경우에는 묘지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한다는 의미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묘지의 양도나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묘지 설치를 위한 양도나 대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법 §19). 즉, 일정한 예외의 경우(동법시행령 §16)를 제외하고는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묘지등의 공시제도

묘지 및 납골시설 등의 공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묘지는 지적공부에 묘지로서 표시되고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법률은 지적법상의 묘지와 장사등에관한법률상의 묘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별도의 묘적부 및 관리대장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적법상의 공시제도와 장사등에관한법률상의 공시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반드시 묘지를 1필지로 하여 구분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묘지의 분양』은 물권으로서의 묘지이용관계 등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또한 양 법률상의 공시방법이 관할기관 사이에 축탁 내지 공조관계를 규정한 바도 없다.

14) 민법상의 임대차나 전세권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거나 전세권자의 결정으로 임대 또는 전전세의 설정이 가능하다.

(4) 민법상 분묘기지권과의 관계

① 관습상의 분묘기지권과 묘지사용권

- i) 법적 성격: 판례가 관습상의 지상권에 의하여 분묘기지를 보호하는 것은 장지제도의 미비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장지제도가 개선되는 대로 소유권을 원래의 모습대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습상의 지상권은 그때까지 인정되는 과도기적·잠정적 물권이라 할 것이다.¹⁵⁾
- ii) 효력범위: 분묘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효력을 미친다.
- iii) 존속기간: 민법 제281조와 제280조를 유추적용하는 것(곽윤직 397면)도 형식논리적이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대판 1982.1.26, 81 다 1220)
- iv) 공시방법: 관습상의 지상권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 근거는 ①『묘의 모양이 바로 공시방법으로서의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 ②『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물권취득의 등기 없이 대지의 소유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있어서와 전혀 동일한 원리』이며, 『취득시효에 의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245조의 예외를 인정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견해 및 판례가 있다.
- v) 성립요건: ①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판례: 대판 1967.10.12, 67 다 1920), ②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단, 그 분묘가 평장된 것으로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③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¹⁶⁾

15) 이영준, 물권법, p.595.

16) 이영준, 물권법, p.595.

5) 묘지등의 관리행정 규정 미비

(1) 묘지의 실태조사

묘지의 실태조사는 무연고분묘의 조사를 위한 목적을 가지는 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묘지의 지적공부상 등록여부, 묘지 설치허가 유무, 분묘의 설치 권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묘적부의 관리

현행 묘적부는 매장신고와 화장신고에 연동하여 기재·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발생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관리가 가능하나, 기존의 분묘에 대한 묘적관리는 실태조사 내지 일제조사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분묘 내지 기준위반의 분묘 등에 관한 사항, 연고자의 파악 등이 불비되어 있다.

(3) 묘지등의 관리대장

공설묘지 및 사설집단묘지의 경우에는 그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묘지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묘지법인의 감독규정 미비

묘지법인에 대한 감독규정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묘지관리등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방법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묘지이용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단독소유에 해당하는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석상의 문제로 남기고 있을 뿐이다.

6) 기타 입법기술상 문제 등

(1) 매장·화장 실태등의 보고의무

장사법에서는 매장, 화장 실태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법§32③)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규칙에서는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21). 따라서 이는 상위법을 위반한 과도한 규제로 되는 문제가 있다. 동 법률에서는 이의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묘지·납골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문제

장묘문화의 선진화는 주로 화장이나 납골을 하여야 하며, 매장을 하려고 할 때에는 집단묘지에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공설·사설의 집단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은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는 몇 개의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즉,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조)는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고 규정하면서 사설집단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조성에 대하여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다.

(3) 장례시설과 형질변경허가

서울고등법원 2001.4.27. 2000누4202, 건축허토지형질변경불허분취소 사건의 판례를 보면 장례예식장에 대하여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위 사건의 경우 수원시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건축허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주지 않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도 없고, 단지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이 원고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다” 라고 판결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보는게 법률적 판단이지만, 일반 주민의 의식은 여전히 혐오시설로 보고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령 등 관련법령은 장례식장을 ‘보건위생시설’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은 도축장·종합의료시설과 함께 기반시설로서 보건위생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특히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종전의 화장장 및 공동묘지, 도축장 등과 같은 유형으로 설정함으로써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데에 일조를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공원묘지나 현대식 집단묘지, 장례식장 등을 보건위생의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사체의 반입방법 및 국외이장 등

사체는 반드시 장의차에 의해서만 화장장에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법령상으로는 특수운반업의 영역에 해당한다. 다만, 개장유골의 경우에 탈골이 이루어진 유골은 꼭 장의차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관련 시설에서는 안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국외이장은 외국에 소재한 분묘 또는 납골을 국내로 개장하는 경우의 절차에 해당하는 바, 이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은 두고 있지 않다.

(5) 묘지등의 이용 표준약관

과거에는 주로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의료시설증가,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반면에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상주에게 받는 빈소 사용료, 의

부음식물 이용 불허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2001. 12. 14 승인하여 고시한 바가 있다.¹⁷⁾

이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 요금 산정기준 마련(제6조)
- 이용시설의 계약기간을 종전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표시(제5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이용을 이용자에게 강제하거나 웃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업자의 의무사항 부과(제7조)
-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명문화(제10조)

이 표준약관의 사용이 실효성을 가질 경우, 소비자이용요금 절감효과는 연 86억원으로 전국장의업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 소비자이용요금 절감효과 : 연 86억원(추정)

- 연간 장례식장 이용객(86,500명) × 장례식장 평균이용료(40만원) × 1/4 = 86억원
- 연간장례식장이용객: 2000년사망자수(247,346명) × 장례식장이용율(35%) = 86,500명

한편,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변하는 과정에 납골시설의 이용 및 집단묘지의 이용에 관한 불만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관련 이용관계에 대한 표준약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설묘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사설묘지나 사설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 특히 홍수 등으로 인한 분묘의 멸실이나 훼손 등의 경우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문제, 원상회복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17) 별첨 부록의 “장례식장 표준약관” 참조.

제 3 장 법제 개선 방안

I. 설치기준·절차 등의 개선

1. 사설개인묘지 및 단체묘지의 설치 개선

1) 사설개인묘지

현행법은 사설 집단묘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상세한 묘지 설치의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녹지공간에 관한 사항,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집수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 경사가 심한 지역에 집단묘지를 설치하여 '98년도 수해시 묘지가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법제의 정비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치허가에 따른 감리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사설개인묘지의 경우에는 분묘설치기간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묘지의 경우에 묘지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으나, 단순히 연고자에 대하여 분묘의 개장의무를 부여하여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를 할 근거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분묘기지권을 가진 자 또는 분묘 및 묘지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자에게 있고, 다른 친족 등에게는 없다. 이러한 권리가 없는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견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연고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민법상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분묘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분묘의 소유자

내지 연고자와 다른 자인 경우에 개장하여 화장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법 제18조). 그렇다고 동 분묘가 무연분묘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무연분묘로 의제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관습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2) 단체묘지

현행 법률은 종교법인, 군민회등의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집단묘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설묘지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는 개인, 가족, 종중·문중 및 법인묘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설치기준 등도 이러한 분류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중·문중묘지에 준하여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 단체묘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단체묘지는 법인격없는 단체 또는 종교법인에 대하여 최소한 종중·법인묘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맞다고 본다.

II. 규정의 미비·흠결 및 충돌 개선

1. 용어의 재정리

1) 유 골

장사방법과 관련하여 유골을 세분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① 매 장

매장의 대상은 시체 또는 유골로서 그 방법은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골에는 화장한 후에 발생하는 유골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화장의 대상이 ‘시체 또는 유골’이며, 국립묘지의 경우에는 화장유골의 매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제2조제1호의 “매장”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화장한 유골을 포함한다)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화장

현행법은 “화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볼 때 여기에서의 유골은 ‘사체의 발견 당시 유골’인 경우와 개장시에 발굴되는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골된 유골 및 화장유골로서 매장된 유골』은 제외된다. 아울러 『불에 태워 장사함』의 의미는 i)완전소각처리(유골이 없음), ii) 유골 및 골분을 매장 또는 납골, iii) 골분처리 및 산골처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지 불명확하다.

만일 i)의 방법도 화장의 방법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화장장의 설치기준에 완전소각하여 공중으로 발산하는 방법을 인정하여야 하고, iii)의 경우에는 산골처리에 관한 규정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산골처리의 구체적인 절차와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2. 규정의 보완 및 불합리 제거

1) 사설납골시설

유골 500구미만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신고제로 하고 있다. 종중·문중 등의 경우에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가족납골시설 및 단체의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에 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납골묘의 경우에는 이를 납골당 및 납골탑의 경우와 유사한 유형으로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는 분묘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분묘의 설치기간에 예외를 두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납골·안치되기 때문에 최종 납골되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기간을 적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가 있다.

현행 규정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경우에 1개소에 한하며, 그 납골묘지의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이하, 가족납골묘의 경우에는 30㎡이

하이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납골묘지”의 의미는 납골묘의 점유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납골시설은 사원, 묘지, 화장장 및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묘지에 설치할 경우에 일반적인 분묘의 경우와 달리 납골묘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현행법 제16조제2항의 규정 및 동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 시설물설치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중 또는 문중 납골묘의 경우에 납골묘지의 면적 범위 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납골묘라고 하더라도 성묘 등을 하는 관습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등의 처리

현행 법령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동 절차에 따라 처리된 납골유해에 대하여는 준용규정을 두어 무연고 시체의 처리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10년동안 납골하도록 하고 있다.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도록 하고 있다(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이 경우도 집단매장장소의 시설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도 묘지의 관리에 준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추모공원』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고 관리하여 산골된 고인의 명단 등을 시설물의 형태로 보존하는 등 묘지등을 구하지 못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간의 납골을 방지하고 산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납골시설에 납골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묘지에 설치한 납골묘는 시한부매장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결국 모든 매장분묘는 최종적으로 납골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납골시설의 수용량 부족을 초래할 것이며, 산골장의 확대가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 산골장은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지 및 납골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기타 산골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화장장이나 공설묘지 등에 산골할 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기타 다른 장소에 산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도 없다. 산골할 경우에 개장신고 등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화장하여 위생처리된 산골골분은 특정된 산골장 이외에 사설묘지의 구역 안이나 임야 등의 수목 아래 일정한 깊이 이상으로 매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둘 필요가 있다.

Ⅲ. 관련 법령의 정비

1. 구체적인 법규 제정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조 및 제5조). 그러나 수도권외의 경우나 광역시 또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당해 관할 구역 안에 묘지나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자체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묘지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서울시와 같이 당해 구역 안에 묘지등의 시설을 설치할 공유지나 기타 입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설묘지 또는 납골시설등의 개념을 확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묘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묘지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묘지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집단 국·공설묘지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은 시체를 화장 또는 납골하여 집단묘지에 매장하려고 해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공원화된 집단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葬事를 할 때에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된 장사시설이 부락 단위가 아니면 최소한 면단위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그 지역 안에 충분한 장사시설을 갖추도록, 그리고 국민 개개인 역시 사설집단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해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i)공설공원묘원의 확충, ii)화장장료금의 지급 확대, iii)시범 납골묘 보급, iv)시범마을에 대한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v)화장참여 유언장 남기기운동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2. 종합장례서비스제 도입

종합장례서비스제는 지방자치단체, 장례식장 또는 병원에서 상호 연계하는 종합장례서비스는 시신의 냉동보관부터 유골의 처리까지 장례절차 전반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위생적이면서 신속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화장 희망가구를 우선하여 서비스하여 주고 유골을 이장, 납골,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보상제를 실시하면 화장률이 제고되고 현대인의 성향과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가 있다는 제안도¹⁸⁾ 고려하여 볼 만하다.

18) 서울특별시, 『자치서울1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p.203~205: 서울시에는 60여개의 장례식장이 있으나 대부분 병원의 지하에 부설되어 있어 시설이 노후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장례물품, 영구차 알선, 묘지·화장장 등 장묘시설의 안내 등 제반 장례서비스를 일괄하여 제공할 전문화된 민간종합장례식장의 건립을 지원하고자 정부의 재정투융자기금의 용자를 알선하고 있다.

3. 無緣墳墓의 정리

무연분묘의 정리는 원칙적으로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묘지의 무연분묘 정리는 당연히 재활용의 형태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묘지는 공설묘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묘지수급 계획에 기존 묘지의 재활용 사항으로 당연히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무연분묘의 정리와 관련하여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처리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무연분묘의 정리 목적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폐묘된 분묘 및 묘지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분묘설치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하고, 무연분묘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집단묘지로 재활용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연분묘라고 하더라도 국·공유지에 설치된 분묘가 아닌 경우 또는 법 제23조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시한부매장제를 기존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 연고자가 없게 되어 무연분묘로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개장·납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분묘의 이용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법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르고, 가능한 한 死者의 분묘 등은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려는 우리 관습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 제 24조의 무연분묘 정리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일체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로서 분묘 설치 또는 존속의 권원이 없는 분묘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의 설

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분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로서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매장기간이 종료된 무연분묘로 한정하여 개장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⁹⁾

4. 국민의식의 변화 유도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최근에 나타난 장묘제도로서 최초의 개혁사례로 나타난 것을 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 공원묘원의 시한부매장제도인데 이 제도는 약정서상 매장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유족에 통고없이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다.²⁰⁾

경기도 광주군 소망수양관은 프랑스의 종시를묘지의 ‘추억의 정원’처럼 2평 정도에 교회 신자의 화장재를 뿌리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묘 자체를 거부하고 유골을 바다나 산에 뿌리는 산골장(散骨葬 혹은 자연장)을 일반화하자는 ‘장송의 자유를 추진하는 모임’이 결성 됐다. 장례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도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산골장을 장례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이가 90년 총리부 여론조사에서는 22%였지만 4년후 요미우리신문의 조사 결과 53%로 증가했다. 사자를 매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쿄나 오사카 등지의 대도시에서는 심각한 묘지난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산골장이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IV.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수도법령·농지법령 및 국토·도시계획법령간의 충돌·모순문제 개선방안

1. 지적법상의 지목변경과 묘지의 설치

지적법상 지목은 1필지 토지마다 1개의 지목을 설정하며, 2이상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19)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기간의 연장이 없게 된다.

20) 金泰福, “韓國의 墓地問題와 改革方案”, 『21C 葬墓文化 국제심포지엄』, 국민일보사·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 1996.7, p.61~62.

지목을 결정하는 원칙에 있다(지적법 §5 및 동법시행령 §4).

반면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묘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비록 「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필지 단위로 분필된 토지」의 의미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지적법상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지적법시행령 §6 제22호)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장사등에관한법률상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동법 §2 제6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장래에 분묘를 설치할 목적으로 조성되거나 지정된 토지와 분묘를 설치한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27호)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은 「장사등에관한법률상의 “묘지”라 함은 동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나 설치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묘지로 인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적법상 지목이 묘지로 명기되어있다 하여도 동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묘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률에 의한 묘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정비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27호)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 신고·허가된 토지 및 동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관련허가의 의제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후 30일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그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가족, 문중, 종중 및 법인묘지의 경우는 동법률에 의하여 묘지허가를 받으면 80제곱미터이내에 묘지 설치시에는 입목벌채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동법률시행령 제10조).

이와 관련하여 개인묘지는 30㎡(분묘점유면적)이내, 가족묘지는 그 설치면적이 100㎡이하이며, 종중·문중묘지는 그 설치면적이 1,000㎡이하이고, 법인묘지는 10만㎡이상이다(동법시행령 별표2 제2호 및 3호). 따라서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현행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이다. 동법률 제13조제5항의 본문 규정을 살리자면 동조 제5항의 단서 및 시행령 제10조 자체를 삭제하여야 한다. 반면에 동조 제5항 단서의 취지를 살려 일정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에 산림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려면 본문 중 ‘법인묘지’를 삭제하고, 단서는 유지하되,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제한되는 면적을 『100㎡이상 1,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정 제한면적』을 입목벌채 허가가 필요한 묘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를 받은 때』를 추가하여야 기타 집단묘지의 설치허가 요건 및 관련 절차가 형평성을 이룰 수가 있다.

현행 규정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는 당연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법 제13조제5항의 본문과 단서가 모순되는 문제가 있다.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의 설치기준에 면적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V. 묘지관련분쟁 방지

1. 묘지등의 매매와 설치 허가의 승계 문제

종전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타 법률상의 인·허가 및 설치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소관청은 『종전의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에 사

설묘지 설치허가의 유효기간이나 일정 기간내 후속 인·허가 및 조성공사 미착수시 허가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 허가조건에 해당조항이 없는 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설묘지설치허가는 현재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당시 설치허가 등 제반 인·허가 이행 및 시설공사 완료 후 분양·관리중에 있었던 장사시설에 대해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상의 관리·지도감독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당해 행정청이 제기한 설치허가 후 후속 인·허가 및 조성공사 미이행 장사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라고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권이 매매(경매) 등의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 기 허가 받은 사설(가족)묘지 허가권도 새로운 토지취득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나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령에는 설치허가 받은 묘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 없이 수허가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면적·시설물 등의 변동에 따른 변경설치허가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 허가로만 볼 수 없어 해당 토지의 이전으로 기존의 묘지설치허가권도 이전 또는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허가를 받고 산림형질 변경허가까지 얻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종전의 인·허가는 효력을 잃고 현행법에 의거 새로운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가족묘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소관부처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즉, 설치허가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설치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나, 관계부서나 기관에서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전에 기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히 처리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여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한 법 제19조의 규정은 묘지가 설치된 토

지의 매매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묘지의 설치허가 효력이 그 토지의 매매나 양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달리 해석하기가 어렵다. 묘지가 설치된 토지라 하여 특별히 매매나 양도 등의 재산권 처분행위 즉, 물권행위를 금지할 법리적 근거나 정책적 근거는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이미 묘지의 설치허가를 받아 이미 묘지로 조성된 토지를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묘지로서의 법적 성질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묘지등의 설치를 위하여 입목벌채 등 임야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의 문제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과 기존분묘에 대한 적용배제

현행법은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현행 개정법률의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분묘에 대하여 시한부매장제 및 관습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묘지의 매매·양도시의 묘지설치허가의 효력 문제와는 다만, 이 문제는 묘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묘기지권의 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현행법도 여전히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매·양도 등의 경우에 그 토지의 양수인에 대하여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부 록

일본의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²¹⁾

-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소화23년 5월 31일 호외법률 제48호)
-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묘지·매장에관한법률 시행세칙(소화23년 12월 25일 도규칙 제208호)
- 동경도 영원 조례(東京都 靈園 條例)

21) 본 내용은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0년에 발간한 『경기도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 중 부록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 (소화23년 5월 31일 호외법률 제48호)

연혁

- 소화25년 3월 28일 법률제28호 [성병예방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0조에 의한 개정]
- 소화29년 5월 20일 법률제120호 [토지구획정리법시행법16조에 의한 개정]
- 소화31년 6월 12일 법률제148호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한 개정]
- 소화37년 9월 15일 호외법률제161호 [행정불복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80조에 의한 개정]
- 소화43년 6월 15일 호외법률제101호 [도시계획법시행법7조2에 의한 개정이일부 개정규정은 소화44년 6월 3일 호외 법률 제38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 소화45년 4월 1일 호외법률제12호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3항에 의한 개정]
- 소화50년 7월 16일 호외법률제67호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 주택지 등의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조에 의한 개정]

제1장 총칙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 및 매장 등이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적합하고, 또한 공중위생 그 외의 공중복지 견지에서 지장없이 행하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법률에서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 이하 동일)를 땅속에 파묻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 화장 」이라고 하는 것은 사체를 매장하기 위해 이것을 태우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로 옮기고, 또는 매장하고, 혹은 수장한 소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분묘」라고 하는 것은 사체를 매장하고 또는 소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묘지」라고 하는 것은 분묘를 만들기 위해 묘지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소골을 수장하기 위해 납골당으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7 이 법률에서 「 화장장 」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을 행하기 위해 화장장으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 2 장 매장, 화장 및 개장

[24시간내의 매장 또는 화장의 금지]

제 3 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이것을 행해서는 안된다. 단 임신 7개월이 되지 않은 사산의 경우는 이에 의거하지 않는다.

[묘지 외의 매장 또는 화장장 외의 화장 금지]

제 4 조 매장 또는 소골의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 이것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2 화장은 화장장 이외의 시설에서 이것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

제5조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려는 자는 후생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 이하 동일)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허가는 매장 및 화장에 관한 것의 경우 사망 혹은 사산의 신고를 수리하고, 사망의 보고 또는 사산의 통지를 받은, 또는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사망 혹은 사산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의 송부를 접수한 시정촌장이, 개장에 관한 것의 경우는 사체 또는 소골이 현재 있는 곳의 시정촌장이 실시한다.

제6조 및 제7조 삭제 [소화45년 4월 법률 12호]

[허가증의 교부]

제8조 시정촌장이 제5조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의 규정에 의해, 매장, 개장 또는 화장의 허가를 내줄 때에는 매장허가증,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정촌장의 매장 또는 화장의 의무]

제9조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사망지의 시정촌장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비용에 관해서는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취급법(명치32년 법률 제93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 등의 허가]

제10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을 경영하려는 자는 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부 록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묘지의 구역 또는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시설을 변경, 또는 묘지, 납골당 혹은 화장장을 폐지하려는 자도 동일하다.

[다른 법률에 의한 처분과 조정]

제11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묘지 또는 화장장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소화43년 법률 제 100호) 제59조 [시행자]의 인가 또는 승인으로 전조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 토지구획정리법(소화29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대도시지역에 있어서 주택지 등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소화50년 법률 제67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구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해 묘지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할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의 인가로 전조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자의 신청]

제12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의 본적, 주소 및 성명을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리자의 응낙여부]

제13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매장(埋葬), 매장(埋藏), 수장 또는 화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허가증이 없는 매장, 수장 또는 화장의 금지]

제14조 묘지의 관리자는 제8조 [시정촌장의 허가증 교부]의 규정에 의한 매장허가증, 개장허가증 또는 화장허가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소골의 매장을 시켜서는 안된다.

- 2 납골당의 관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소골을 수장해서는 안된다.
- 3 화장의 관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해서는 안된다.

[도면, 장부, 서류의 비치 또는 열람의 의무]

제15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면,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 2 전항의 관리자는 묘지사용자, 소골수장위탁자, 화장을 요구한 자 그 외 사자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도면,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열람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허가증의 보존 및 기입]

제16조 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자는 매장허가증,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날로부터 5년간 이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화장장의 관리자가 화장을 행하였을 때에는 화장허가증에 성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화장을 요구한 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관리자의 보고]

제17조 묘지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매월 5일까지 그 전월 중의 매장 또는 화장 상황을 묘지 또는 화장장 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당 관리의 현장검사]

제18조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관리에게 화장장을 방문하여 그 시설,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키고, 또는 묘지,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관리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2 해당 관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검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동시에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설의 정비 그 외의 강제처분 명령]

제19조 도도부현 지사는 공중위생 그 외의 공공복지의 건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시설의 정비 개선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고, 제18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의 2 잡 칙

[독체 규정]

제19조의 2 제18조 및 전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운데 「도도부현 지사」라고 있는 것은 보건소법(소화22년 법률 제101호)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라고 바꾼다.

[지정도시의 특례]

제19조의 3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 가운데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소화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 [지정도시의 사무]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정도시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정령에 있어서 이 법률 중 도도부현 지사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의 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도시의 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재심사 청구]

제19조의 4 제19조2 [독체규정]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법 제1조 [보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이 실시하는 처분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후생대신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별 칙

제20조 다음의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 [8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一 제10조 [묘지·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경영 또는 이들 구역 혹은 시설의 변경 내지는 폐지에 관한 허가] 의 규정에 위반한 자
- 二 제19조 [묘지·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시설 정비개선·사용제한·사용금지 또는 허가의 취소] 에 규정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21조 다음의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1천엔 [8천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

- 一 제3조 [24시간 이내 매장 또는 화장의 금지] , 제4조 [묘지 외의 매장 또는 화장장 외의 화장 금지] , 제5조 1항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 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관리자의 신청·응낙의무·허가증이 없는 매장수장 혹은 화장의 금지·장부서류 등의 비치·열람의무·허가증의 보존 및 기입 또는 관리자의 보고] 의 규정을 위반한 자
- 二 제18조 [현장검사] 의 규정에 의한 해당 관리의 현장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는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안하거나 혹은 허위 보고를 한 자

[양벌규정]

제2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전2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부 칙

[시행기일]

제23조 이 법률은 소화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명령의 폐지]

제24조 일본국 헌법 시행시 현재 효력을 가지는 명령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소화22년 법률 제72호) 제1조의 4 [국회의 의결에 의해 법률에서 정하여진 것] 에 의해 법률에서 개정된 다음의 명령은 폐지한다.

묘지 및 매장단속규칙(명치17년 태정관포달 제25호)

묘지 및 매장단속규칙에 위반하는 자 처분 방법(명치17년 태정관포달 제82호)

매화장의 인가 등에 관한 건(소화22년 후생성령 제9호)

[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명령에 의한 경영의 효력]

제26조 이 법률 시행시 현재 종전의 명령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각각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납골당 경영의 허가신청 특례]

제27조 종전의 명령 규정에 의해 납골당의 경영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지역에 있어서 이 법률 시행시 현재 납골당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이 법률 시행후도 계속해서 납골당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 법률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제10조 [묘지·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허가] 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신청에 대해 허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중전의 명령에 의한 매장·개장 또는 화장의 허가의 효력]
제28조 이 법률 시행시 현재 중전의 명령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촌장에 의해 받은 매장, 개장 혹은 화장의 인허 또는 이들 이들 인허증은 각각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받은 허가 또는 허가증으로 간주한다.

부 칙 [소화25년 3월 28일 법률 제26호]

이 법률은 소화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화29년 5월 20일 법률 제120호 초]

1 이 법률은 신법 [토지구획정리법=소화29년 5월 법률 제119호]의 시행날 [소화3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화31년 6월 12일 법률 제148호]

- 1 이 법률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소화31년 법률 제147호)의 시행날 [소화3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률의 시행시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농업위원회의 위원의 직에 있는 자의 겸업 금지 및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 지사 혹은 도도부현의 위원회 그 외의 기관이 처리하고, 또는 관리, 집행하고 있는 사무의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 [지정도시의 사무] 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 라고 한다) 또는 지정도시의 시장 혹은 위원회 그 외의 기관으로의 인계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각각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소화31년 법률 제147호) 부칙 제4항 [의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의 겸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9항으로부터 제15항까지 [지정도시로의 사무인계에 따른 경과조치] 에서 정하는 것에 의한다.

부 칙 [소화37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초]

- 1 이 법률은 소화3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은 이 부칙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관한 행정청의 부작위 그 외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 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청 그 외 불복 신청(이하 「소원 등」 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소원 등의 재결, 결정 그 외의 처분 [이하 「재결 등」 이라 함]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등에 대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결 등에 더욱이 불복이 있는 경우의 소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4 전항에서 규정하는 소원 등으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에 관한 것은 동법 이외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으로 간주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청 그 외의 불복신청의 재결 등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가 있다.
- 6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으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소원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또한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날로부터 기산한다.
- 8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9 전 8항에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소화43년 6월 15일 법률 제101호]

이 법률 [중략] 은 신법 [도시계획법=소화43년 6월 법률 제100호]의 시행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부 칙 [소화44년 6월 3일 법률 제38호 초]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 [중략]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화45년 4월 1일 법률 제12호 초]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소화50년 7월 16일 법률 제67호 초]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화50년 10월 정령 30호에 의해, 소화50년 11월 1일부터 시행]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소화23년 7월 13일 호외 후생성령 제24호]

연 혁

소화25년 4월 1일 호외 후생성령 제13호 [성병예방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10조에 의한 개정]

소화31년 9월 22일 후생성령 제41호 [제1차 개정]

소화45년 4월 1일 호외 후생성령 제12호 [제2차 개정]

소화52년 1월 18일 후생성령 제1호 [환경위생감시원증을 규정하는 성령
부칙 3항에 의한 개정]

제 1 조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소화23년 법률 제48호. 이하 「법」
이라고 함) 제5조 제1항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 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의 매장 또는 화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조 제2항 [시정촌
장의 허가] 에 규정하는 시정촌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 一 사망자의 본적, 주소, 성명(사산의 경우는 부모의 본적, 주소, 성명)
- 二 사망자의 성별(사산의 경우는 사아의 성별)
- 三 사망자의 출생년월일(사산의 경우는 임신개월수)
- 四 사인(법정전염병 등)
- 五 사망년월일(사산의 경우는 분만년월일)
- 六 사망장소(사산의 경우는 분만년월일)
- 七 매장 또는 화장장소
- 八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사망자와의 관계

제 2 조 법률 제5조 제1항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 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장의 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부 록

신청서에 매장 혹은 납골의 사실을 증명하는 묘지 또는 납골당 관리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조 제2항 [시정촌장의 허가] 에서 규정하는 시정촌장에게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 一 사망자의 본적, 성명, 성별(사산의 경우는 부모의 본적, 성명)
- 二 사망년월일(사산의 경우는 분만년월일)
- 三 매장 또는 화장의 장소
- 四 매장 또는 화장의 연월일
- 五 개장의 이유
- 六 개장의 장소
- 七 신청서의 주소, 성명 및 사망자와의 관계

제 3 조 무연분묘에 매장된 사체(임신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 이하 동일) 또는 매장된 소골의 개장을 하려는 자는 전조의 신청서에 다음에 적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분묘의 사진 혹은 도면을 첨부하여 이것을 분묘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해당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해당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적으로 소멸되거나 또는 그 소멸이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 一 묘지사용자 및 사망자의 본적, 거주지의 시정촌장에 대해 연고자의 유무를 조회하고, 없다는 내용의 회답을 받은 경우.
- 二 묘지사용자 및 사망자의 연고지 신청을 독촉하는 내용을 2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고, 그 최종 공고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신청이 없었던 경우.

제 4 조 법 제8조 [허가증의 교부] 에 규정하는 매장허가증은 특별양식 제1호 또는 제2호, 개장허가증은 별도 기재 양식 제3호, 화장허가증의 별도기재 양식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5 조 법 제10조 제1항 [묘지, 납골 또는 화장장의 경영의 허가] 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거쳐 도도부현 지사(지방자치법(소화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 [지정도시의 사무]의 지정도시에 있어서는 시장으로 함. 이하 동일)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 신청자의 주소, 성명

二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및 그 부근의 약도

三 납골 또는 화장장의 부지 및 건물의 도면

四 그 외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묘지의 구역 또는 납골당 혹은 화장장 시설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전항 각 호에 적은 것 외에 변경 후의 구역 혹은 시설의 도면 및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조 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자는 다른 묘지 또는 납골당에 소골의 분골을 매장하고 또는 그 수장을 위탁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골의 매장 또는 수장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소골의 분골을 매장하고 또는 수장을 위탁하려는 자는 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자에게 전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조 묘지의 관리자는 묘지의 소재지, 면적 및 분묘의 상황을 적은 도면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2 납골당 관리자는 소골 수장 위탁자 및 사망자의 상황을 적은 납골부를 갖추어놓지 않으면 안된다.

3 화장장의 관리자는 화장을 요구한 자 및 사망자의 상황을 적은 화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제9조 화장장의 관리자는 화장을 실시할 때에는 화장허가증에 화장을 실시한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이것을 화장을 요구한 자에게 주지 않으면 안된다.

부 록

제10조 법 제17조 [관리자의 보고] 의 규정에 의한 매장상황의 보고는 별도 기재양식 제6호, 화장상황의 보고는 별도기재 양식 제7호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1조 법 제18조 제1항 [해당관리의 현장검사] 의 규정에 의한 해당관리의 직권을 행사하는 자를 환경위생감시원이라고 하고, 동조 제2항 [증표의 제시] 의 규정에 의해 휴대하는 증표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성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화25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13호]

이 성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화31년 9월 22일 후생성령 제41호]

이 성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화45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12호]

이 성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화52년 1월 18일 후생성령 제1호 초]

(시행기일)

1 이 성령은 소화5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별도기재 양식 제 2 호 [제 4 조]

제 호 사태매장허가증

부모의 본적	
부모의 주소	
부모의 성명	
성 별	
임 신 개 월 수	
분만년월일	
분만의 장소	
매 장 장 소	
신청자 주소, 성명	

소화 년 월 일

시정촌장 인

별도기재 양식 제3호 [제4조]

제 호 개장허가증

사망자의 본적	
사망자의 주소	
사망자의 성명	
사망자의 성별	
사 망 년 월 일	
매장 또는 화장장소	
매장 또는 화장 년월일	
개 장 장 소	
신청자 주소, 성명 및 사망자와의 관계	

소화 년 월 일

시정촌장 인

별도기재 양식 제5호 [제4조]

제 호 사태화장허가증

부모의 본적	
부모의 주소	
부모의 성명	
성 별	
임 신 개 월 수	
분만년월일	
분 만 장 소	
화 장 장 소	
신청자 주소, 성명	

소화 년 월 일

시정촌장 인

부 록

별도기재 양식 제6호 [제10조]

매장상황보고(월분)

소화 년 월 일

○○묘지

소재지

관리자 성 명 인

시정춘장 전

一 사체

성명	성별	본적	사망지	생년월일	사인	매장일

二 사태

부모의 성명	성별	본적	사산지	생년월일	매장일

(주) 사체매장보고와 사태매장보고는 별지로 한다.

별도기재 양식 제7호 [제10조]

화장상황보고(월분)

소화 년 월 일

○○묘지

소재지

관리자 성 명 인

시정춘장 전

一 사체

성명	성별	본적	사망지	생년월일	사인	화장일

二 사태

부모의 성명	성별	본적	사산지	생년월일	화장일

(주) 사체화장보고와 사태화장보고는 별지로 한다.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소화23년 12월 25일 도규칙 제208호)

개정 소화28년 4월 7일 도규칙 제63호

제 1 조 이 세칙에서 법이란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을, 규칙이란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2 조 이 세칙에서 관할장이란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말한다.

제 3 조 법, 규칙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보고서는 관할장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4 조 관할장이 전조의 서류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법, 규칙 및 이 세칙 그 외의 법령 규정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5 조 법 제12조에 의한 관리자에 관한 신고는 그 관리자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 6 조 법 제12조의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신도, 불교, 그리스도교 그 외의 종교 각파의 의식에 지장이 없는 설비를 하고, 항상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청결과 정돈을 유지하여 분묘 그 외의 부속 건축물이 도괴 또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묘지의 사용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 7 조 공동묘지의 경영자는 그 묘지 내에 신도, 불교, 그리스도교 등 각파별로 정연하여 구획하여 각 신자의 매장,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8조 묘지 내 또는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부지 내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一 녹개 그 외의 불결한 것을 버리는 것.
- 二 새나 짐승 그 외 동물을 잡거나 또는 함부로 대나무나 나무를 자르는 것
- 三 묘비 그 외의 건조물 및 공물을 훼손하는 것.
- 四 사시의 취급이 정중하지 못하고 사자에 대해 예를 지키지 않는 것.

제9조 무덤 구덩이의 깊이는 2미터 이상이지 않으면 안된다. 단 소골을 매장하는 경우는 깊이 30센티 이상으로 한다. 지하수 그 외의 사유로 전항보다 어려운 경우는 관리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10조 특별구, 팔공자시, 입천시, 무장야시, 삼웅시 및 청매시 지역 내의 묘지에는 소골 외는 매장해서는 안된다. 토지의 상황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전항의 제한에 보다 어려운 것은 묘지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의 사항을 지사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 一 묘지 사용자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
- 二 묘지소재지의 지명, 번호, 면적 및 평면도(미터로 표시한 6백분의 1 축도)
- 三 사방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도면(미터로 표시한 6백분의 1 축도)
- 四 출원 사유의 상세 전항에 의해 허가한 묘지라도 위생상 그 외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폐지된 묘지의 소골 및 사체는 이것을 개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2조 규칙 제2조의 개장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증명서는 관리자가 신청서에 서명증인하여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법 제5조 제2항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발굴할 때에는 환경위생감시원 또는 관계관리의 임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14조 발굴한 무연분묘의 소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이것을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지사에 있어서 위생상 지장없다고 인정한 것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一 1기마다 별개의 용기에 넣어 법명, 속명, 사망 및 개장년월일 그 외 필요한 사항을 명기할 것.

二 용기는 도기 또는 불후성의 것을 사용할 것.

사체는 화장한 후 전항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5조 행려사망인 또는 명치 원년 이전의 사망자 그 외 특수 사유가 있는 자를 개장하려고 할 경우는 소속 관할구 시정촌장의 허가를 받아 전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지사에 있어 토지의 상황, 특수구조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위생, 풍치 그 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一 묘지

1 주위는 견고한 담 또는 밀식한 관목의 울타리를 칠 것.

2 묘지 내의 통로는 콘크리트 또는 돌, 연와 등으로 축조하고, 그 유효폭원은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묘지 내에는 적당한 배수로를 갖추어 비 또는 흐르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이 축조 재료는 토관 또는 전호의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의 접속 면에는 몰타르로 메꾸어 누수를 방지할 것. 배수로는 하수도 또는 용수로로 바로 연결시킨다.

4 행려사망인은 가매장하기 위한 장소를 구획할 것.

二 납골당

1 독립건물로 주변에 상당한 빈터가 있을 것.

부 록

- 2 외벽 및 지붕은 내화구조로 할 것.
- 3 내부 지반은 돌, 연화, 콘크리트 그 외 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재료로 구조할 것.
- 4 당내의 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 5 출입구 및 창에는 방화호를 설치할 것.
- 6 출입구 및 당내 납골장치에는 열쇠를 잠그는 설비를 할 것.

三 화장장

- 1 화장장의 주변은 담, 선반 또는 수목으로 경계를 할 것.
- 2 장내에 화장실, 배설물 소각소 및 소독소를 설치할 것.
- 3 화장실은 동시에 25체 이상을 화장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굴뚝을 세워 소각장치를 할 것.
- 4 배설물 소각소는 동시에 4두짜리 통 25개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높이 18미터 이상의 굴뚝을 소각장치를 할 것. 단 굴뚝은 화장실의 굴뚝에 접속시켜도 관계없다.
- 5 소독소는 욕실, 훈증실의 2부분으로 구분할 것.

제17조 묘지의 신설 또는 확장은 다음의 제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 1 국부현도 그 외 중요한 도로·철도·궤도·하해로부터 거리가 20미터 이상·인가·학교·병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2 고조로 음용수에 관계없는 토지일 것.
- 3 전2호 외 풍치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토지일 것.

화장장의 신설 또는 확장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단, 떨어져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모두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전2항의 규정은 토지의 상황에 의해 다소 참작할 수 있다.

납골당은 사원 또는 교회의 경내 혹은 화장장 부지 내가 아니면 건설할 수 없다. 단 공공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건설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18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이 소재지의 상황에 의해 혹은 구조, 설비가 위생, 풍치 그 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물의 이전, 개조 그 외 필요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 납골당 또는 화장장이 다음의 각호 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一 낙성 기일을 경과하여도 준공을 하지 않을 때.
- 二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했을 때.
- 三 이 세칙 또는 이 세칙에 의거하여 발동되는 명령에 위반했을 때.

제20조 규칙 제5조의 신청서(정부 2통)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또는 도면,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 신청자의 주소, 성명 외 생년월일, 법인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정관의 사본(정관 원본을 제시할 것)

二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부근의 약도는 다음처럼 표기한다.

1 인근과의 경계, 인가, 학교, 병원, 철도, 궤도, 부현도 그 외 중요한 도로(소방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구별할 것), 공원, 하천, 바다, 용수, 저수지, 우물, 샘 및 소화전의 우 LCL를 나타내고, 또한 그것들과의 거리를 미터로 표시할 것.

2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2백미터의 것으로 6백분의 1 축도일 것.

三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부지도면은 미터로 표시한 6백분의 1 축도일 것.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건물의 도면은 모두 다음의 미터로 표시한 1백분의 1 축도로 하고 또한 상세한 완성도를 첨부할 것.

1 배치도

2 평면도

3 구조도

四 전 3호 외 신청서에는

1 신설, 이전, 변경의 이유를 상세히 기재할 것.

2 공사의 착수 및 낙성의 기일(신설 또는 변경)을 기재할 것.

3 유지 관리의 방법을 기재할 것

부 록

- 4 사원 또는 교회의 묘지 혹은 납골당의 신설, 확장,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단도 또는 종도의 총대가 연서할 것.
- 5 인접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 6 부지가 차지의 경우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 7 농지의 경우는 해당 농지위원회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 8 토지대장의 등본을 첨부할 것.
- 9 시구정촌이 경영하는 것은 해당 의회의 의결서 등본을 첨부할 것.

제21조 화장장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 연서의 상서면으로 관할장을 경유하여 지사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22조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묘지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가 갖추어놓지 않으면 안되는 도면은 6백분의1 이상 크기의 축도가 아니면 안된다.

제23조 규칙 제8조 제1항의 묘적은 별기양식 제1호, 동 제2항의 납골부는 별기양식 제2호, 동 제3항의 화장장은 별기양식 제3호로 한다.

제24조 지사 및 관할장에게 있어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되는 묘지대장은 별기양식 제6호로 한다.

제25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에 출입하는 현장위생감시원 혹은 관계관리는 종교 각파의 중지 전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6조 법 제18조의 지사 권한은 관할장도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

법 제10조의 지사 권한 가운데 묘지의 확장에 대해서는 2단보 이내의 것에 한해 관할장이 대결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구장(지소장을 포함) 및 시정촌장은 전년중에 허가한 매장 또는 화장 수를 다음해 1월말까지 후생성 보고 예 제12 그 외 2의 양식에 의거하여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 칙

제28조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제29조 다음의 동경 「도령」 동경 「부령」 훈령 및 통첩은 폐지한다.

- 묘지 및 매장취체세칙(소화22년 5월 동경 「도령」 제47호)
- 묘지설치 및 관리세칙(대정6년 7월 동경 「부령」 제44호)
- 묘지설치 및 관리규칙시행수속(대정8년 1월 동경 「부」 훈령 제3호)
- 묘지관리규정(명치24년 8월 동경 「부령」 제68호)
- 매장인허증하부에 관한 건(명치33년 12월 동경 「부령」 제102호)
- 묘지 묘적 서식(대정12년 2월 동경 「시」 훈령 갑 제6호)
- 공장묘지묘적소식(명치24년 11월 동경 「시」 서기관 통첩 제2362호)
- 원사원내공장묘지묘적서식(명치24년 11월 동경 「시」 훈령 제6호)
- 원사원내공장묘지사용권서식(명치24년 11월 동경 「시」 훈령 제196호)
- 화장장취체규칙(소화22년 5월 동경 「도령」 제46호)
- 납골당취체규칙(소화22년 5월 동경 「도령」 제48호)

제30조 이 세칙 시행시 종전의 동경 「도령」 동경 「부령」 또는 경시청령에 의해 허가 또는 인가된 것이라도 위생 또는 풍치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 또는 설치의 변경, 혹은 개조를 명령할 수 있다.

제31조 도서에 있어서는 관할장의 직권은 당분간 중앙보건소 출장소장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단 지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중앙보건소장을 거쳐 상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2조 제23조의 묘적, 납골부 및 화장부는 지사가 별도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소화26년 4월 7일 도규칙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기 양식(略)

동경도 영원 조례(東京都 靈園 條例)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조례는 동경도 영령원(營靈園)(이하 靈園이라고 한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장묘지(共葬墓地) 시설 사용의 적정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및 위치)

제 1 조의 2

영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別表)와 같다.

(사용 허가)

제1조의 3

영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지사(知事)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사용 목적)

제 2 조

영원은 분묘의 용도로 쓰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석 형상류(碑石形像類)의 건설 또는 휴게소(休憩所) 설비 그 외 타 분묘 및 제사에 따른 사용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사용자 자격)

제 3 조

영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지사(知事)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이

부 록

의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전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매장(埋葬)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 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사는 사용시키려는 매장장소의 수가 현저하게 적은 장합(場合) 그 이외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매장장소를 사용하려는 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다.

(公募 等)

제 3 조의 2

지사는 영원을 사용시키려 할 때에는 해당 영원의 명칭, 소재지, 매장장소의 수, 사용신청기간, 그 외의 동경도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해서 영원을 사용하려는 자를 모집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1) 비석형상류(碑石形像類)의 설치장소 및 휴게소 부지
 - (2) 공모 결과, 사용신청...
 - (3)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외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전에 필요한 자에게 사용시킬 필요가 있는 매장장소
 - (4) 전 각호 이외에 지사가 영원의 관리상 그 이외의 특별한 이유에 의해 공모에 의하지 않고 사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매장장소
- 2 영원의 사용신청은 공모 때마다 1인 1개소로 한다.

(選考 방법)

제 3 조의 2

지사는 공모의 결과, 영원의 사용신청자 수가 사용시킬 수 있는 매장장소의 수를 넘을 때에는 추첨에 의해 시키는 자를 결정한다.

(사용 승계)

제 4 조

매장장소 및 비석형상류(碑石形像類)의 설치장소 사용은 해당 매장장소 또는 비석형상류(碑石形像類)의 설치장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의 사망 그 이외의 이유에 의해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지사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인발생 직후 지사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비제한 및 비용부담)

제 5 조

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고 함)에 대해, 사용장소에 대해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혹은 유지관리상 필요한 비용 그 이외의 부담을 부담시킬 수 있다.

(사용장소의 반환)

제 6 조

사용장소에... 바로 지사에게 신고하고, 그 장소를 원상(原狀)으로 하고 본부에 반환할 수 있다. 단 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현상(現狀)대로 반환할 수 있다.

(사용 제한)

제 6 조의 2

지사는 영원의 관리, 도시계획사업 그 이외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된 사용장소 또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장(改葬)한 매장장소에 관계되는 영원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전항의 장합(場合)에 있어서, 지사는 해당 영원명, 구역, 매유(理由 매장사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용장소 등 변경 또는 반환조치)

제 7 조

지사는 영원의 관리, 도시계획사업 그 이외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영원의 사용자에 대해 그 사용장소 또는 소재물건(所在物件)

을 변경 또는 반환시킬 수 있다.

2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 또는 반환시킨 장합에는 해당 변경 또는 반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제 8 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합에는 지사가 영원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매장장소의 사용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제사를 승계할 자가 없을 때.
 - (2) 매장장소의 사용자인 법인이 해산했을 때.
 - (3) 매장장소의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일 또는 개장(改葬)한 일로부터 매장을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했을 때.
 - (4) 매장장소의 사용자가 3년간 관리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5) 휴게소부지의 사용자가 1년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6) 영원의 사용자가 주소불명으로 되어 10년을 경과했을 때.
 - (7) 영원의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 (8) 사용자가 사용장소를 전대(轉貸)했을 때.
 - (9) 이 조례 혹은 이것에 기초하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사용자는 바로 그 장소를 원상으로 복원하여 본부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사용자가 전항의 조치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사가 이것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義務者)로부터 징수한다.

제 2 장 매장 및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

(면적의 한도)

제 9 조 매장장소 및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의 면적은 다음 한도에 의해 지사가 허가한다. 단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매장장소의 철거장소를 다시 매장장소로 사용하는 장합에 한해 그 면적을 초과해서 허가할 수 있다.

- (1) 매장장소 : 1개소 96㎡ 이내
- (2)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 : 1개소 64㎡ 이내

(사용개소의 제한)

제10조

매장장소의 사용은 사용자 1인당 1개소로 한다. 단 매장의 여지가 없는 장합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료)

제11조

매장장소 또는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로부터는 사용허가 때에 다음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 (1) 매장장소
 - 가. 일반 매장장소 : 1㎡당 1,2000 엔
 - 나. 지생(芝生) 매장장소(부속 매장설비를 포함함) : 1㎡당 2,3000엔
- (2)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
1㎡ 당 140,000엔

(도외거주자의 사용료)

제12조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본부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영원의 사용을 허가할 때(영원소재의 건정촌(市町村)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해당 영원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제외.)에는 그 사용료는 전조(前條)에서 정하는 사용료에 50%를 더한다.

제13조

삭제 (削除)

(사용료의 감면)

제14조

재해 그 이외 상당한 사유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사는 영원의 사용료 기 이외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 록

(허가증의 교부와 재교부 수수료)

제15조

매장장소의 사용자에게는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2 매장장소의 승계사용자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자는 사용허가증의 서환(書換) 또는 재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3 사용허가증을 서환 또는 재교부한 장합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 (1) 서환 : 1건당 900엔
- (2) 재교부 : 1건당 300엔

(관리료)

제16조

매장장소의 사용자로부터는 영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다음의 관리료를 징수한다.

- (1) 일반매장장소 1㎡당 1년 150엔
- (2) 지생매장장소 1㎡당 1년 300엔
- 2 전항의 관리료 계산시 1㎡ 미만은 1㎡로 한다.

(사용료 및 관리료의 불반환)

제17조

기납(既納)의 사용료 및 관리료는 환부(還付)하지 않는다. 단 매장장소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그 장소의 전부를 반환했을 때에는 기납사용료의 반액을 환부한다.

제3 장 휴게소

(사용허가)

제18조

휴게소 설치를 위해 영원 내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사에게 신청해서 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사는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위치 및 면적을 정해 허가할 수 있다.

(사용료)

제19조

휴게소 부지의 사용자로부터 1㎡당 1개월(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에 27엔 이내에 있어서 동경도 규칙이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전항의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동경도 규칙이 정하는 것에 의한다.

(사용료 감면)

제20조

천재 그 이외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해 휴게소 부지에 있는 물건이 손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지사는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업무의 제한)

제21조

휴게소 부지의 사용자는 그 사용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를 휴지(休止)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 4 장 잡 칙(雜則)

(무연분묘의 개장)

제22조

지사는 매장장소의 사용허가를 취소했을 때에는 그 분묘를 일정의 장소에 개장(改葬)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분묘개장 이전에 그 장소를 종전 사용자의 친족 또는 연고자가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지사는 이것을 허가할 수 있다.

부 록

(토지의 일시사용)

제23조

사용자가 그 사용에 따른 공사 그 이외의 필요에 의해 영원 내를 일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사용기간은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의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1㎡당 1개월(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15엔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별 칙)

제24조

영원 내의 토지, 시설물 또는 수목을 손상하고 혹은 허가 없이 사용한 자는 1만엔 이하의 과료(過料)에 처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이 조례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참고자료》

□ 관련 법령 규정

국립묘지령

제 1 조 (설치) 군인·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안장대상) ①묘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수장된 자 기타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체를 안장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5·10·13, 80·11·18, 81·12·31, 87·12·31, 90·10·19, 94·12·31, 96·12·31, 97·9·30, 97·12·20>

1.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자. 다만,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제외한다.
2.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장관급장교 또는 20년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한 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 3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4.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과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참고자료》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

5.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6.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사망자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신설 70·12·14>
 - ③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는 묘지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72·7·26>
 - ④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72·7·26>

제 4 조 (시체안장의 제한)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장관급장교이었던 자와 동항제3호·제3호의2·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시체를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히 지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2·7·26, 83·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묘지에 안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상의 기준에 따라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무명용사등의 합장) ①전몰한 자로서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무명용사의 유골은 합장할 수 있다.

②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전몰자의 영령은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70·12·14>

[전문개정 70·12·14]

제6조의2 (묘의 면적) ①묘는 정조식으로 지정묘역안에 설치하되, 묘당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의 묘 : 264평방미터
2.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장관급장교 및 이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자의 묘 : 26.4평방미터
3. 영관급이하의 군인·군무원 및 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의 묘 : 3.3평방미터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할 경우에도 제1항의 묘당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70·12·14]

제7조 (묘의 규격과 시설기준) ①묘의 시설은 국립현충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72·7·26, 96·6·1>

②묘는 평장으로 한다. 다만, 국가원수이었던 자의 묘는 그 유족의 희망에 따라 봉분으로 할 수 있다.

③묘의 규격과 시설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국립현충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철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72·7·26, 75·10·13, 96·6·1>

⑤묘에는 묘지번호를 붙인다. <신설 72·7·26>

[전문개정 70·12·14]

제11조 (묘적부) 국립현충원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묘적부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6·1>

제15조 (이장) ①피안장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 또는 시체

《참고자료》

를 묘지 이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유가족이나 관계부처의 장이 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묘지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묘지에 안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75·10·13>

군행형법

第55條 (屍體의 假埋葬 등) 收容者가 死亡한 때에 그의 親族 또는 親知가 그 屍體를 즉시 引受하지 아니하면 이를 假埋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火葬할 수 있다.

第56條 (屍體 및 遺骨의 교부) 屍體 또는 遺骨은 親族 또는 親知의 請求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合葬후에는 屍體 또는 遺骨의 교부를 請求할 수 없다.

第57條 (屍體 및 遺骨의 合葬) 屍體 또는 遺骨을 假埋葬한 후 2年을 경과하여도 그 교부를 請求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이를 合葬할 수 있다.

第58條 (屍體의 解剖) 受容者의 屍體는 學術研究上 필요한 경우로서 本人의 遺言 또는 相續人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解剖를 목적으로 이를 醫科大學(齒科大學을 포함한다)·病院(軍病院을 포함한다) 기타 研究機關에 보낼 수 있다.

군행형법시행령

제109조 (수용자사망시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형집행외의 질병·고령 등의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검시하게 하고 그 사실을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의관은 수용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 등 그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찰관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성명·직위 및 검시 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 (사망의 통지)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거나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병명·병력 및 사망연월일시와 시체를 인수하라는 뜻을 지체없이 사망자의 친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시체의 교부 등) ①소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체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장은 법 제56조 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시체를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하거나 의과대학 등에 보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2조 (유골의 교부 등) ①소장은 시체를 화장한 경우 그 유골을 인수하라는 뜻을 사망자의 친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유골을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재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유골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가매장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경우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본적 및 사망연월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④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한 경우 합장자의 성명·본적 및 사망연월일을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

※ 동법시행규칙에는 관련규정 없음.

※ 정리

- 수형자 사망 → 군의관의 시체 검시 → 사망 통지(지체없이) → 교부 청구(통지한 후 24시간이내) → 시체·유골의 교부·시신의 기증·가매장 → 합장(가매장 2년후 교부청구자가 없는 경우)
- 매장원칙: 가매장·합장(시신 또는 화장후 유골)

《참고자료》

- 가매장의 장소·합장장소에 관한 규정 없음
- 합장기간에 관한 규정 및 그 이후 처리규정 없음
- 가매장 및 합장의 방법(예, 평장 또는 봉분 등)

행형법

第58條 (屍體의 假埋葬等) 收容者가 死亡한 때에 그의 親族 또는 親知가 그 屍體를 即時 引受하지 아니하면 이를 假埋葬하여야 하며 必要한 때에는 火葬할 수 있다. <改正 95·1·5, 99·12·28>

第59條 (屍體, 遺骨의 交付) 屍體 또는 遺骨은 請求에 依하여 親族 또는 親知에게 交付한다. 다만, 合葬後에는 交付를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9·12·28>

第60條 (屍體, 遺骨의 合葬) 屍體 또는 遺骨을 假埋葬한 後 2年을 經過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合葬할 수 있다. <改正 99·12·28>

第61條 (屍體의 解剖) 收容者의 屍體는 學術研究上 必要한 때에는 本人의 遺言 또는 相續人의 承諾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解剖하기 爲하여 病院 其他 研究機關에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5·1·5, 99·12·28>

행형법시행령

제13장 사망 및 사형의 집행

제165조 (수용자사망시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시체를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95·8·26>

②수용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의무관은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8·26>

③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신분과 성명 및 검시 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8·26>

제166조 (사망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병력 및 사망연월 일시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8·26>

제167조 (시체의 인도등) 소장은 법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시체를 가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하거나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95·8·26]

제168조 (시체의 가매장) ①소장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등의 묘지에 가매장하여야 한다. <개정 95·8·26, 2000·3·28>

②시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소장은 시체를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 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00·3·28>

제169조 (시체·유골의 합장) ①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 <개정 95·8·26>

②삭제 <95·8·26>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

第4條 (遺族의 승낙) ①屍體를 解剖하고자 할 때에는 그 遺族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참고자료》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1. 屍體의 解剖에 관하여 民法 第1060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이 있는 때
2. 死亡을 확인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그 屍體의 引受者가 없는 때. 다만, 社會福祉施設收容者는 제외한다.
3. 2人이상의 醫師(齒科醫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診療하던 患者가 死亡한 경우 診療에 종사하던 醫師 全員이 死因을 調査하기 위하여 특히 解剖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遺族의 所在가 不明하여 遺族의 승낙여부가 判明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解剖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 경우 다음 각目の 1에 해당하는 者가 解剖하여야 한다.
 - 가. 第2條第3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解剖한 經驗이 있는 者
 - 나. 醫科大學의 解剖學·病理學 또는 法醫學을 專攻한 教授·副教授·助教授 또는 專任講師
4. 第2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때
 -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낙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③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屍體의 引受者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削除 <99·2·8>

第6條 (屍體解剖 命令) 保健福祉部長官·國防部長官(軍人의 屍體를 解剖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市·道知事는 屍體를 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그 死因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國民保健에 중대한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屍體의 解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6條 (屍體解剖 命令) 保健福祉部長官·國防部長官(軍人의 屍體를 解剖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屍體를 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그 死因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國民保健에 중

대한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屍體의 解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3·9·29>

[[시행일 2004·3·30]]

第7條 (變死體의 檢證) ①變死體 또는 變死의 疑心이 있는 屍體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22條의 規定에 의한 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解剖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剖는 刑事訴訟法 第140條 또는 第17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剖를 排除하지 아니한다.

第8條 削除 <98·12·30>

第9條 (研究를 위한 解剖) 人體의 構造를 研究하기 위한 屍體의 解剖는 醫科大學에서 하여야 한다.

第10條 (屍體의 관리) 屍體를 解剖하거나 屍體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摘出하는 者는 당해 屍體가 다른 屍體와 구분되도록 各具別로 관리하여야 한다.

第10條 (屍體의 관리) ①屍體를 解剖하거나 屍體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摘出하는 者는 당해 屍體가 다른 屍體와 구분되도록 各具別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는 자는 당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9·29>

③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공여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9·29>

④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 (引受者가 없는 屍體의 교부 등)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引受者가 없는 屍體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屍體의 부패방지

《참고자료》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醫科大學의 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醫科大學의 長이 醫學의 教育 또는 研究를 위하여 屍體의 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14歲미만으로 인정되는 屍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30>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日刊新聞에 2回이상 公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屍體는 死亡이 확인된 날부터 60日이 경과하기 전에는 解剖할 수 없다.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醫科大學의 長에게 屍體交付證明書を 교부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交付證明書가 교부된 경우에는 埋葬및 墓地等에關한法律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屍體交付證明書는 屍體火葬申告證에 같음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屍體交付의 時期·節次·屍體의 寫眞撮影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事項 기타 屍體의 교부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0>

第13條 (屍體의 引渡) ①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받은 醫科大學의 長은 遺族 기타 死亡者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者가 屍體의 引渡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屍體의 전부 또는 일부를 引渡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醫科大學의 長과 屍體의 引受者는 屍體의 引渡와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經費도 請求할 수 없다.

第14條 (屍體의 火葬) ①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받은 醫科大學의 長은 그 目的이 달성된 때에는 그 屍體를 火葬하여 遺骸를 納骨堂에 安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火葬하여 遺骸를 納骨堂에 安置할 때에는 그 遺骸가 다른 屍體의 遺骸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15條 (屍體處理費用의 부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받은 醫科大學의 長은 運搬費·火葬費 및 기타 당해 屍體의 처리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16條 (屍體標本 승낙) ①醫科大學의 長, 醫療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病院의 長 및 기타 醫學에 관한 研究機關의 長은 醫學의 教育 또는 研究를 위하여 屍體의 전부 또는 일부를 標本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遺族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引受者가 없거나 遺族의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낙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第17條 (屍體에 대한 禮儀) 屍體를 解剖하는 者 또는 그 전부나 일부를 標本으로 보존하는 者는 屍體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禮儀를 지켜야 한다.

第18條 (權限의 위임)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시체의 부패방지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보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의 옷·소지품등 사망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류물품은 사진을 촬영하여 당해 사진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조 (탐문·조사)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신분증·유류물품등에 의하여 사망자의 신원과 연고자를 탐문·조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제 4 조 (시체의 부분적출 보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부분적출을 한 자는 부분적출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체의 교부시기·절차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발생을 통보받은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시체의 교부요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요청하기로 결정한 의과대학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체교부요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과대학의 장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발생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체교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부요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과대학의 장으로부터 시체의 교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지체없이 그 시체를 의과대학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과 시체의 인수(연고)자를 찾는다는 내용

가. 사망자의 얼굴사진

나. 사망자의 신체적 특징, 사망당시의 착용복장

다. 사망자의 발견경위 및 사망원인

2. 시체의 인수자가 없어 시체를 다음과 같이 교부·보존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

가. 시체교부의 목적

나. 시체교부의과대학의 명칭 및 연락처

다. 시체교부일자

라. 시체의 해부등을 시작하는 일자

3. 유족 기타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가 시체의 인도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시체를 인도하겠다는 내용

4. 공고일시·공고자 및 연락처

④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4세미만의 인정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소아발육표준치에 의한 신장·체중·흉위·2차성징등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제 6 조 (시체의 사진촬영등)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연고자 확인등을 위하여 시체를 교부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진을 촬영하여 각 1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1매는 3년간 자체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체얼굴의 정면, 좌·우 사진
2. 시체 전신의 전·후면 사진
3. 기타 신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부위의 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사진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5 조 (시체해부의 승낙)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승낙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 <개정 99·3·29>

제 6 조 (시체의 부분적출 승낙)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승낙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체부분적출승낙서에 의한다.

제 7 조 (시체의 부분적출 허가) ①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체부분적출허가신청서를 부분적출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부분적출을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한

《참고자료》

때에는 허가 받은 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지한 면허종별 및 면허번호, 소속 및 직위, 허가사항 등을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체의 부분적출 보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부분적출보고는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다.

船員法

第17條 (水葬) 船長은 船舶의 航行중 배안에 있는 者가 死亡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水葬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第18條 (遺留品の 처리) 船長은 배안에 있는 者가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경우에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안에 있는 遺留品에 대하여 保管 그 밖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선원법시행규칙

제11조 (수장)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체를 수장할 수 있다. <개정 99·6·24>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2.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할 것. 다만,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일 것

5.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 후일 것

②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망한 자의 유발 기타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유류품의 처리)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 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1.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 성명·주소
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3.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4.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③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 불명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山林組合法

第46條 (사업) ①地域組合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2·12·18>

- 1.~6.(생략)
7. 福祉厚生事業
- 가. 福祉施設의 設置 및 관리

《참고자료》

- 나. 公園墓地·納骨堂의 造成 및 관리, 私設墓地管理 등 葬祭事業
- 8.~10.(생략)
- 11. 第1號 내지 第10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 12.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山林廳長의 승인을 얻은 사업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 9 조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6.(생략)
- 7. 10만제곱미터이상의 공원묘지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
- 8. ~10.(생략)
- 11. 제10조제3호 자목의 시설설치를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

제10조 (건축물·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등)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87·7·7>

- 1.~2.(생략)
- 3. 공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
- 가. ~ 사.(생략)
- 아. 공원묘지(기존 공설묘지를 포함한다)안의 그 운영에 필요한 대기실·휴게소·사무소·장제소·납골당(공설 화장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포함한다) 및 조상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장 및 그 부대시설

□ 장례식장 『標準約款』 (공정거래위원회 2001. 12. 14 승인)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장례식장 이용요금 산정기준

- 현재 빈소사용료의 경우, 전날 오후 5시에 입실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발인을 하는 경우 실제 사용시간은 16시간임에도 2일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함(제6조)

현행약관	표준약관
<p>○ 임대차계약기간은 200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p> <p>※ 임대료(보통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실(일반실):165,000원 - 예식실 : 200,000원 - 안치료 : 45,000원 	<p>○ 안치실·빈소·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p>

2) 이용시설의 계약기간

- 불합리한 이용료 산정을 시정하기 위해 이용시설 계약기간을 시간단위로 함(제5조)

《참고자료》

현행약관	표준약관
○임대차계약기간은 2000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로 한다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일시,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 ※ 안치일시 : 월 일 시 분

3) 장례식장의 구입강제 금지

-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못하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이용을 이용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제7조)

현행약관	표준약관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음식(밥, 국등)반입을 하지 않는다. ○장례식장 및 비품 일체를 공급받기로 체결함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해지

-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므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사유를 무효화하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해지시 이용료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현행약관	표준약관
<p>○“갑”은 “을”이 본 계약서상에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갑”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을”에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이미 사용자에게 수령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p> <p>○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5) 휴대물에 대한 책임

-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이용자 휴대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함(제12조)

《참고자료》

현행약관	표준약관
○“을”은 목적 건물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면하지 못합니다.

6) 계약의 해석

- 약관이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이 보통임. 따라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나 현행약관은 이와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자 자의에 의한 해석을 우선하는 것을 시정함(제2조)

현행약관	표준약관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등 관계 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葬禮式場 標準約款

표준약관 제00029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등(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장례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장례식장’이라 함은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 ② ‘안치’라 함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염습’이라 함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입관’이라 함은 시신을 관속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 ⑤ ‘빈소’라 함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 ⑥ ‘접객실’이라 함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 ⑦ ‘예식실’이라 함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 ⑧ ‘발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관을

《참고자료》

가지고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이용시설)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일시,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

안치실	호	안치일시	월	일	시	분
빈 소	호	입관일시	월	일	시	분
접객실	호					
예식실	호					

제6조(이용료)

- ① 이용료는 안치실·빈소·접객실·예식실의 이용료, 염습비, 예식비, 청소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합니다.
- ② 안치실·빈소·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③ 이용자가 직접 염습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염습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수시비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발인하기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내역별 금액)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장례절차(종교별, 가문별 등)에 따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공정타당한 제반 요청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장례식장내에 인화성,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2. 타인의 장례 또는 조문에 방해가 되는 고성방가, 소란, 지나친 종교행사 등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3. 장례식장의 시설물, 기구 등을 멸실·훼손하는 행위

제9조(계약해지)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시설물 및 기구를 반환하고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미 이용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

《참고자료》

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할 이용료나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사고로 인한 책임)

사업자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장례식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2조(휴대물에 대한 책임)

①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면책)

사업자는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 김경혜, “장묘의식의 변화와 서울시 화장 장려방안”, 『서울시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6.
- 고창현, “葬事文化의 沮害要因과 葬事法의 改善方案”,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02. 12.
- 金泰福, “韓國의 墓地問題와 改革方案”, 『21C 葬墓文化 국제심포지엄』, 국민일보사·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 1996. 7.
- 박상호,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02. 12.
- 박창수, “한국 묘제제도에 관한 소고”, 『부동산정책연구』 제3집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6.
- 장 로베르 피트, 『도시와 토지』, 한국토지행정학회 국제심포지엄 자료.
- 오전균, 『도시와 묘지』, 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 국제심포지엄(1992. 9).
- 경기도, 『2000년 경기도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
- 보건복지부, 장사등에관한법률 해설, 2001.
- 서울특별시, 『자치서울1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 1996.